

**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2016. 12.



### 〈운영 매뉴얼의 적용 참고 사항〉

- ◎ 본 매뉴얼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운영매뉴얼 적용 시,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최신 법령을 확인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 차례 |||

## I |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 1. 현장체험학습 목적 ..... 1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 ..... 1
- 3.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향 ..... 2
- 4.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 8

## II |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 1. 기본 계획 수립 ..... 9
-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 13
- 3. 현장답사 ..... 13
- 4. 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 ..... 14

## III |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 1. 계약의 이해 ..... 17
- 2.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 22
- 3. 계약 시 구비서류 ..... 31

## IV |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 1. 현장체험학습 사전준비 ..... 35
- 2. 단체 차량 이용 사전 점검 ..... 36
- 3.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 36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 교육 .....	37
5. 사고 발생시 대응 및 보고 .....	39
6. 경비집행 .....	41
7. 정산 .....	41

## V |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1. 사후 평가 및 결과 활용 .....	42
2. 현장학습 평가 결과 공개 .....	42

## 부록

【부록1】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	43
【부록2】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	49
【부록3】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	51
【부록4】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점검 항목 .....	53
【부록5】 교통 안전 점검 항목 및 안전교육 .....	55
【부록6】 청소년 단체 현황 .....	62
【부록7】 음식 안전 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	63
【부록8】 숙소 안전 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	65
【부록9】 화재 예방 안전 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	67
【부록10】 활동별 안전 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	68
【부록11】 활동별 응급조치 사항 .....	77

# I.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 1. 현장체험학습 목적

- 가.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 <현장체험학습 구분>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① 수학여행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
    - ② 수련활동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 활동
    - ③ 기타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하루에 이루어지는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활동
- ※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활동의 경우 진로체험 매뉴얼을 참고하여 운영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

### 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
-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라.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사. 시·도교육청별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규정

### 3.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향

- 가.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 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한다.
- 다.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 라.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 마. 장학 활동, 감사, 각종 사안 처리 시 본 안내사항에 기초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사항 >

- ▶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 ▶ 위탁운영 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 ▶ 사전답사 및 이동경로별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교통 수단별 사전 안전 교육 실시 : 선박·항공·기차 등 포함)
- ▶ 인솔교원의 현장 임장지도 의무화
- ▶ 학생·인솔자 보험가입 의무화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 수학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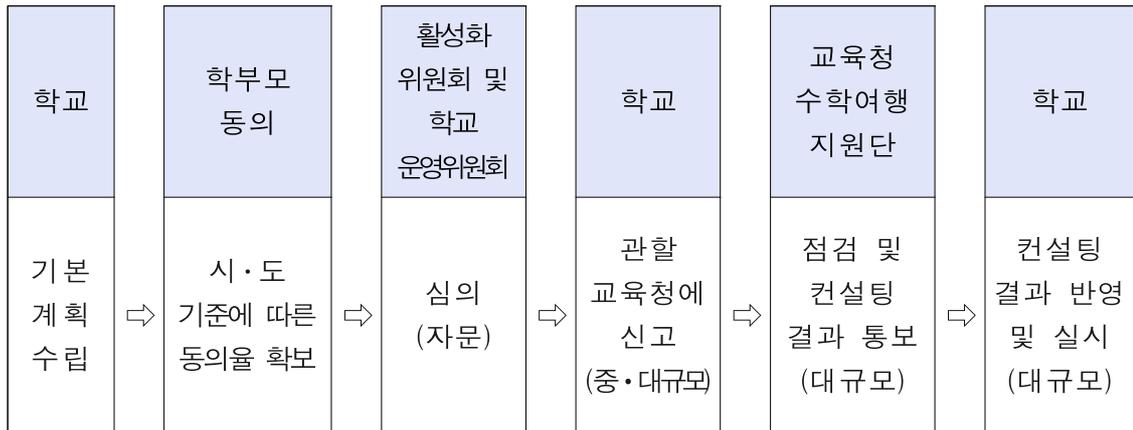
1)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 · 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 대규모 수학여행(학생 150명 이상)은 학생 · 학부모 동의 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대책 및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교육청 등에서의 점검 및 컨설팅 후 실시

### < 대규모 수학여행 운영기준 >

- ▶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학부모 동의 비율을 확보한 후 시행
- ▶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50명당 1인 이상)
- ▶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검토

- 참가학생 100~149명(중규모)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 후 실시하고, 100명 미만(소규모)은 안전 대책을 강화 후 자율적 운영



2)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동학년 국내 · 외 분리 수학여행, 과다경비 부담 등)은 지양한다.

3) 국내 수학여행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가급적 자제한다.

- 4) 부득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현지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경제적 부담에 따른 소외학생 지원 대책 마련 후 추진한다.
- 국외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적정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학여행지원단의 점검 및 컨설팅 후 실시
  - 현지 대사관(영사관, 여행사 등)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영사콜센터)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영사콜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제공
      - ※ 국내 02-3210-0404, 해외(유료) +822-3210-0404, 해외(무료) +800-2100-0404 (구체적인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참고
    - (여행경보제도)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해외여행객에게 단계별 행동요령 안내 서비스 제공
      - ※ 남색(여행유의)·황색(여행자제)·흑색(여행금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또는 해외안전여행 앱 참고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국가별 여행경보제도, 여행자 사전등록제 '동행' 등 국가별 안전공지 사항 서비스 활용

#### 5)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 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규모(학생 15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중규모는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하고, 소규모는 인력확보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배치 권장
-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 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를 요구한다.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구직란, 크레존(www.crezone.net), 워크넷(www.work.go.kr) 등을 활용하여 안전요원 확보
    - ※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한다.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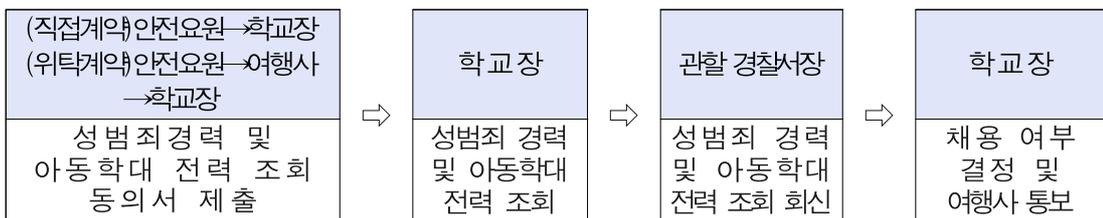
▶ 연수운영 :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

구분 \ 과정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과정(보수)
이수시간	14시간	7시간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연장(2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교육 : 10시간</li> <li>· 수상, 산악 등 레저 활동별 안전수칙 교육 : 1시간</li> <li>· 재난유형별 대처 및 예방법 교육 : 1시간</li> <li>· 학교교육과정 및 학생의 이해 : 2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교육 : 5시간</li> <li>· 안전요원의 역할과 책임 : 1시간</li> <li>· 학생의 이해 : 1시간</li> </ul>

▶ 교육신청

- (개인) 대한적십자사 전국 시도지사 상설교실 개인별 신청
- (단체) 학교, 시·도교육청 등 단체에서 희망시 강사 파견 지원
- ※ (참고)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포함하는 '(가칭)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을 위한 법 개정중

-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사를 실시한다.



※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경력·전력 조회 가능

## □ 수련활동

1)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및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시·도 학생교육원 등

2) 수련활동의 목적, 적정 이동 거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을 결정한다.

3)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확인

4) 특히 숙박을 하거나, 대규모(150명 이상),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활동물질사용·위험기구사용 활동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다.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인증여부·신고 내용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http://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종합평가 결과 5등급 : 최우수-우수-적정-미흡-매우미흡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점검 의무사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

- 정기적인 안전점검(소방,전기,가스,수질,전반시설 등)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매월 공문서로 보고
- 직원의 내·외부 안전 교육(소방 및 방화관리, 응급처치관리, 위생관리 등)은 연4회 이상 실시
- 직원 대상 성희롱예방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

## □ 현장체험학습 공통사항

1) 현장 답사를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한다.

2)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 3)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한다.
- 4)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 위탁 시 운영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시한다.

※ 교육청 또는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솔·지도하는 경우 직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인증 없이도 운영 가능

- 5)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를 확인(yap.youth.go.kr)한다.

※ 활동 참여 학생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활동은 의무적으로 확인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화학물질 사용·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확인 제외 대상 프로그램 >**

- 일회성 단순 체험(관광, 관람, 견학, 강의, 참가 등), 이벤트, 단순 기능·기법·기술을 체득하는 경우(소방훈련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창립되고 담당부처가 분명한 6개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 청소년적십자(RCY), 4H본부, 걸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해양청소년단연맹
- 주 참가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청소년 나이 만9세~24세)
- 활동 실 참가시간이 1일 3시간 미만 또는 1일 2시간씩 2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한 22개 청소년단체 및 시·도교육청 가산점 부여 청소년단체에 한하여, 학교장 승인하에 학교내 조직을 갖추고 지도교사가 직접 참여하며 해당 단체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록6 참조)
- 환경부,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
-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태권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어촌인성학교) 또는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통일교육원, 인재개발원, 연수원 등)

## 4.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b>1</b>	<b>기본 계획 수립 : 실시 시기, 목적, 방법(소규모/학년단위)등</b>	→ 9p 참고
	▶ 학부모 동의 및 선호도 조사	
<b>2</b>	<b>「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b>	→ 14p 참고
	▶ 학부모·교원으로 구성, 시기·장소·프로그램·활동경비 등을 심의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여부,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운영	
<b>3</b>	<b>현장 답사(계약 전)</b>	→ 13p-14p 참고
	▶ 현장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일정점검, 숙박 및 체험시설 등 답사	
<b>4</b>	<b>「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b>	→ 15p 참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존중	
<b>5</b>	<b>계약</b>	→ 17p 참고
	▶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따라 계약 체결(계약 필수사항 확인 등)	
<b>6</b>	<b>현장 답사(시행 직전)</b>	→ 13p-14p 참고
	▶ 숙소 및 체험시설 안전상태(우천 시 대피할 곳, 화장실 및 식당 위생상태, 집합 장소, 유해환경 등) 확인 및 점검	
<b>7</b>	<b>사전 안전교육 :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성범죄) 예방 등</b>	→ 35p 참고
	▶ 교통수단별, 숙소 등 체험시설, 성범죄(폭력)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b>8</b>	<b>운영</b>	→ 35p 참고
	▶ 사전 준비 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	
<b>9</b>	<b>현장체험학습 평가</b>	→ 41-42p 참고
	▶ 경비 집행 및 정산	
	▶ 만족도 조사, 실시 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 Ⅱ.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 1. 기본 계획 수립

가. 학교교육계획서에 현장체험학습 대상, 기간 등을 명시한다.

-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 후 추진

나. 현장체험학습 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되, 교육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학여행 지원단, 한국관광공사,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활동의 목적, 테마, 지역, 운송, 숙박, 식사, 프로그램, 학생별 역할 분담 등
- 교육장소 및 시설,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 ※ 활동 장소를 먼저 결정하고 추진하는 형태 지양
- 현장체험학습 관계자에 대한 청렴 교육 계획 포함
  - 여행, 숙박, 운송 등 관련 업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금품, 향응, 편의(교통, 숙박 등)를 제공 받는 행위 금지

####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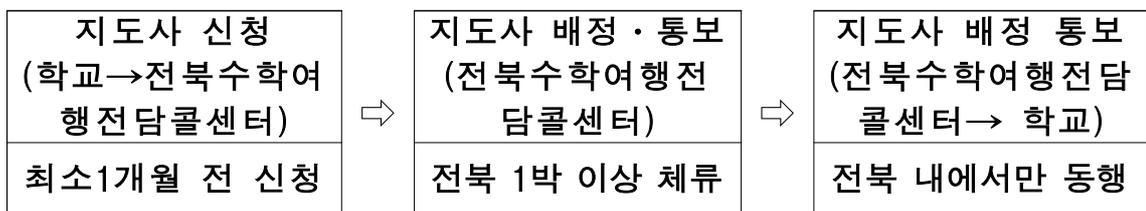
- 학교의 교직원이 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등으로부터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팸투어’의 경우에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1항 3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향응’에 해당
- \* 팸투어(Fam Tour) : 지자체나 항공사 등이 관광상품 마케팅, 특정관광단지 홍보를 위해 관련자, 유관인사 등을 초청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것

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소방안전 본부의 숙박업소 사전 점검, 전라북도의 지원 인력 배치, 제주도의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을 적극 활용한다.

< 전북 수학여행 전담 지도사 >

-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버스 1대당 1명) 배치하여 전북에서의 전체 일정을 동행, 인솔 지원, 문화관광해설, 야간학생관리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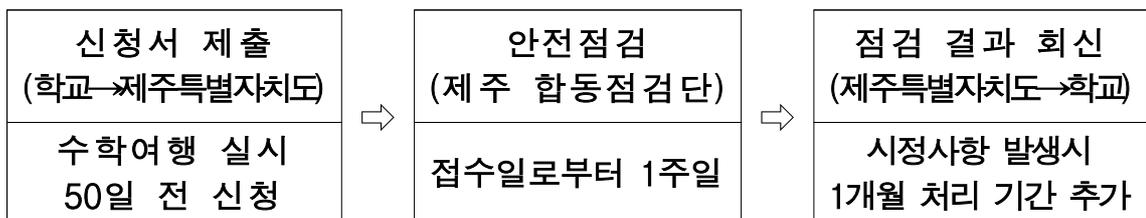
※ 문의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수학여행 전담콜센터(☎ 063-232-0226)



< 제주도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

- 제주도를 방문하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결과 회신[신청서식 참고]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064-710-3934)



[신청서식]

##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

신청 학교	(학교명)			
	(주 소)			
	업무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사) 010-0000-0000(핸)
	<b>(여행일정)</b> ○ 수학여행 기간 : ○ 제주도착 시간/장소 : ○ 방문인원 : 총       명(인솔자   명, 학생   명)			
점검요청 시 설	1. (숙박시설) ○○○ 리조트 - 연락처 :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2. (음식점) ○○리조트 내 식당 - 연락처 :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3. (음식점) ○○식당 - 연락처 :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협조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 보완 일정 등을 감안하여 <b>수학여행 방문 50일 전 신청</b>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학 교 장

라.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 수학여행 포털(크레존, www.crezone.net) 활용: 수학여행 우수사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 프로그램 개발자료의 맞춤형(지역, 규모, 테마 등) 정보검색 가능

<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답습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친밀한 대화와 체험의 공유가 가능한 소규모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실시(학생수 100명 미만 운영)
- 초·중·고 학교급별 특성 및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학생·학부모 요구 등을 반영한 주제가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테마형 수학여행 실시

<예시>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수학여행, 문화·역사 체험 테마, 산업 체험 테마, 일제수탈의 현장 체험, 유교문화와 선비문화 체험, 남도소리의 멋과 맛 기행 등

- 자연·지역 문화·예술·공연 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획·운영
- 기존의 획일적인 시기를 지양하고, 활동 영역 및 지역에 따라 운영 시기를 다양화하여 실시

< 사례 : 교과연계 테마 수학여행(대구 ○ ○ 여고) >

▶ 1학년 8학급(2학급씩 4팀 운영)

▶ 교과서 내용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 및 코스 설정

구분	문학기행팀	역사기행팀	지리기행팀	생태기행팀
목적	교과서 작품 배경 및 작가 생가 방문을 통한 문학 탐구	삼국통일과 불교예술을 꽃피운 신라역사 체험	산과 강이 어우러진 강원도 지형 탐방	백두대간의 남쪽 지리산 생태 탐방
(1일)	안동 하회마을 →독립운동기념관	경주국립박물관 →안압지	영월 청령포 →별마로천문대	남원 향토박물관 →광한루→육모정
(2일)	이육사기념관 →도산서원→주실마을 →두들마을	남산→밀레니엄파크 →신라역사과학관	레일바이크→화암동굴→정동진	지리산노고단→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화엄사
(3일)	부석사→소수서원	불국사→석굴암 →감포 문무대왕릉	대관령옛길→삼양목장→월정사	화개민속장터→평사리 →섬진강, 하동송림

##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 가. 수익자 부담의 교육활동이므로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 학부모(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으며 강압적 참여 유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동의 비율 제시로 사실상 수학여행, 수련 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른 학부모(학생)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획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
- 나. 장소 및 시기, 체험활동 구성에 대한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다.

## 3. 현장답사

- 가.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현장답사를 한다.
- 계약 전과 실시 전 2회 현장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

### < 1회 현장답사 실시 요건 >

- ▶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를 통해 실시하는 경우
-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등의 안전점검을 신청하여 결과를 회신을 받은 경우
- ▶ 100명 미만 소규모 운영
- ▶ 최종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등급 ‘적정’ 이상 시설 이용 및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 ▶ 기타 학교장의 책임 하에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등이 확보 된 경우

- 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사전답사를 1회 실시한다. 단,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생략할 수 있다.

다. 계약 전 현장답사는 학부모, 교사,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고, 시행 직전 현장답사는 실제 업무 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 가능 하다.

라. 현장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한다.

- 실시경로·예정지와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 4. 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심의

##### 1) 성격 및 구성

- 성격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연계형 소위원회로서 프로그램 개발, 업체 심의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
  - 학교운영위원의 일부가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연계성 및 심의의 연속성 확보
- ※ 다만, 학교장이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 구성

- 위원은 위원장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50% 이상 확보
-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
- 위원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에 대한 학교 내부 규정 수립

##### 2) 역할

- 학부모위원이 현장답사에 참여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
-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실시의 개선 필요 사항 건의

### 3) 심의 내용

- 학부모 · 학생 · 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 결과, 현장답사 자료, 시기와 장소 선정, 교육활동 프로그램, 경비 등을 심의
- 계약 방법에 따른 활성화위원회 심의

계약 방법		심의(자문) 사항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	·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구체적 코스 및 세부 운영 사항 심의 · 견적서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2인 이상 견적	· 복수안 심의하고 계약 우선순위에 대한 1차 결정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사 · 학교별 자체 결격사유 심의
일반(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사
2단계 입찰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사, 2단계 제안서 적격성 평가 실시
다수공급 자계약 (MAS)	5,000만원 미만	· 나라장터 쇼핑몰 탑재 상품 중 복수안 추천, 계약 우선순위 부여
	5,000만원 이상 (2단계 경쟁)	· 2단계 심사 대상 업체(상품)를 선택, 제안평가 실시(단 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1억 미만은 제안요청 없이 구매가능)

###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1) 성격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2) 역할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을 심의(자문)
- 현장체험 운영 계약 우선순위 부여 결정에 대한 심의

### 3) 심의(자문) 내용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자문)
- 계약 방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계약 방법		심의(자문) 사항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	· 활성화 위원회 심의 결과 확정
	2인 이상 견적	· 활성화위원회의 복수안 심의 결과 검토·계약 우선 순위 부여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의
일반(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의
2단계 입찰		· 적격성 평가 실시 결과 확정
다수공급 자계약 (MAS)	5,000만원 미만	· 계약 우선순위 부여 결정에 대한 심의
	5,000만원 이상 (2단계 경쟁)	· 제안 평가 실시 결과 확정

##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 1. 계약의 이해

#### 가. 계약 업무 흐름도

1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 작성</li> </ul>
2 예산집행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서 품의 요구, 기초 금액 작성</li> </ul>
3 계약방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견적 제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li> <li>• 2인 이상 견적 제출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li> <li>• 입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li> </ul>
4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서 작성</li> <li>• 입찰 공고 : 7일~40일</li> <li>• 수의계약 안내 공고 : 3일~5일</li> </ul>
5 개찰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낙찰하한율 90%</li> <li>•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낙찰하한율 87.745%</li> <li>• 2단계 입찰 : 예정 가격이하 최저가 낙찰</li> </ul>
6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보증금(10%), 인지세,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li> </ul>
7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산출내역</li> </ul>
8 선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의 50~70% 지급 가능, 채권 확보[선금 보증서]</li> </ul>
9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물가 변동, 그 밖의 계약변경</li> </ul>
10 계약이행의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연배상금(용역 0.13%, 운송 0.25%)</li> </ul>
11 용역완성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료검사원, 검사(완료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li> </ul>
12 대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li> <li>•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G2B 확인 가능]</li> </ul>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최신 법령 및 시·도교육청별 계약 관련 지침을 확인하여 추진

## 나. 계약 방법

계약 방법		내 용	금액 기준
다수공급자 계약 (MAS)	5,000만원 미만	조달청 쇼핑몰 상품 중 희망 상품 선택	납품 요구 금액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2단계 경쟁)	조달청 쇼핑몰 다수공급자 상품 중 5개 업체 이상에게 제안요청서 송부 후 평가하여 업체 선정 ※ 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1억 미만은 제안요청 없이 구매가능	납품 요구 금액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기 견적서에 의해 계약 가능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 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견적서 제출 공고 후 계약 상대자 결정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 용역 계약
입찰	일반(제한) 입찰	계약 이행 능력 심사(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재무상태, 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제한 입찰)	추정 가격 5,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
	2단계 입찰 (가격·규격 분리 입찰)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나라장터(G2B) VS 학교장터(S2B)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시스템으로 조달청에서 운영·관리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 교육기관의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7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관리
- ☞ S2B는 2천만원 초과인 2인 이상 전자견적 대상에서는 이용 불가

다. 금액에 따른 계약 방법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억원 미만
1인 견적 제출 가능 <b>수의계약</b>		
2인 이상 견적 제출 가능 <b>수의계약</b>		
<b>일반(제한) 입찰, 2단계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 계약</b>		

<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 >

- 계약의 원칙은 일반입찰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특정업체와의 계약(수의계약)을 위한 편법적 분할계약 금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제1절
  -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추정가격은 인솔자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수의계약은 지역·실적 등 **중복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 ‘일반(제한)입찰’ 방식은 **중복제한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예) 실적제한+지역제한 불가

## 라. 계약 형태에 따른 구분

원칙 : 학교직영(분할계약)과 위탁 방식(일괄계약) 중 학교 자율로 결정

다만 시·도교육청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활동 유형, 학교 규모, 지역 여행사 현황 등 지역 특수성,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음

형 태	내 용	계약 방법
직영방식 (분할계약)	숙박, 식사, 운송, 프로그램 모두 학교에서 직접 계약 하고 운영	경비는 숙박비·식비·교통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별 계약 방식 적용
위탁방식 (일괄계약)	숙박, 운송, 식사, 프로그램 모두 여행사에 위탁 계약	위탁운영 방식 채택 시, 반드시 허가된 업체에 위탁(불법 알선업자 개입 금지)

### < 유의사항 >

- 수련활동 계약은 운송업체·수련업체로 계약
  - ※ 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이벤트회사 등과 계약은 금지
- 학생들이 실제로 숙박하는 장소의 수련업체와 계약
  - 콘도에서 숙박하면서 유스호스텔과 계약하는 것은 금지
- 학교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패키지 형태)는 반드시 프  
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위탁 시 재위탁 여부 및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기관명, 대표자명, 유효기간

마.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여행, 숙박·식당업체 공통사항)

- 1)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
- 2)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 3)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외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여행자 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

-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 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를 모두 포함하여 가입
  - 활동 :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 등) 및 숙박형 체험활동
    - ※ 상기 외 현장체험학습, 15세 미만 학생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
    - ※ 시도별 자체 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등 보장내용 확인 등) 명시
- 영업배상보험 가입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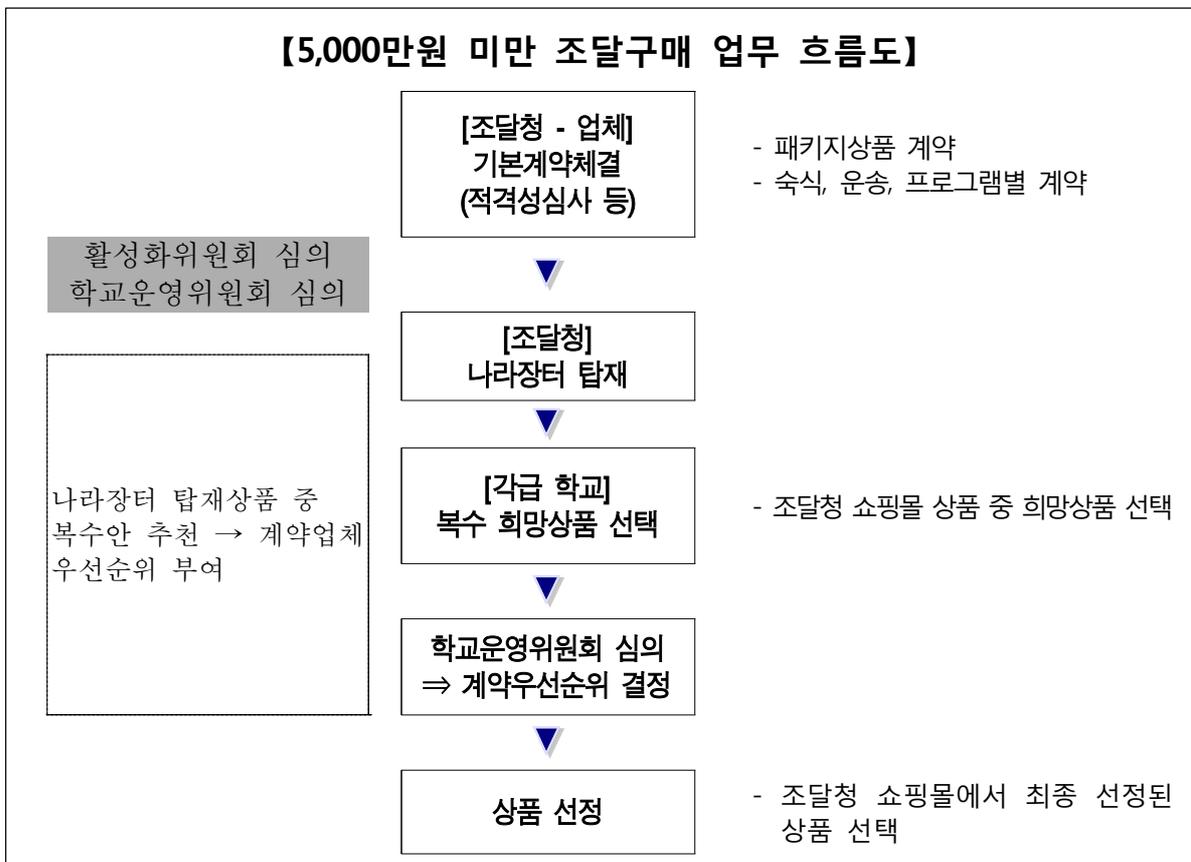
구분	보험종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수련시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숙식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2.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 가. 다수공급자계약(MAS)

#### 1) 납품요구 금액 5,000만원 미만 : 직접 납품 요구

- 종합쇼핑몰에서 계약업체별 과업설명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납품 요구 대상 업체 선택 후 ‘장바구니’에 담거나 ‘바로구매’ 선택
- 업체에서 숙박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하여야 납품요구 가능하므로,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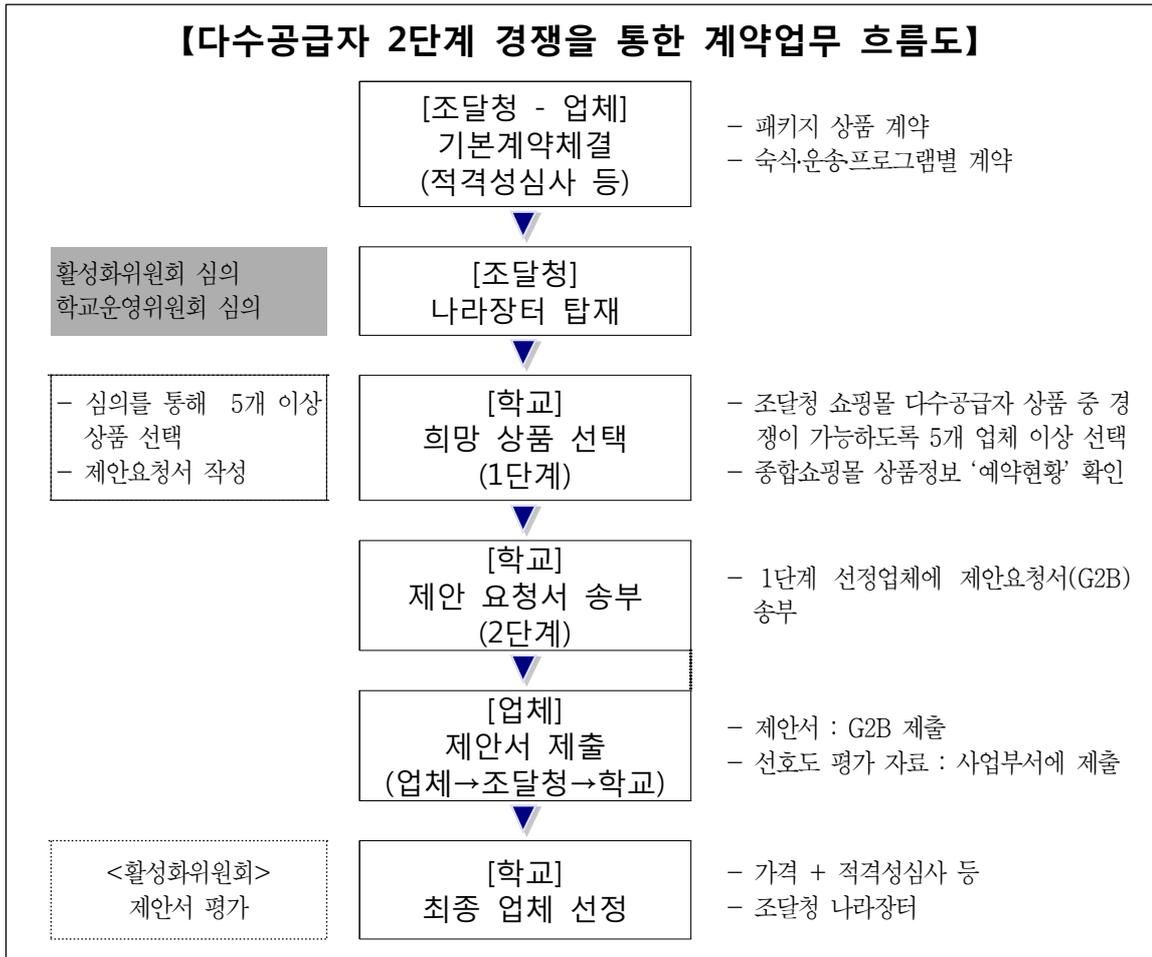


####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요 >

- 학교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대하여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 · 숙박시설 · 수련시설의 납품능력과 가격을 심사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 학교에서는 예산과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원하는 여행사 및 숙박 · 수련시설을 선택하는 제도
- 수학여행 · 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2016-1, 2016.1.8.)

2) 납품요구금액 5,000만원 이상 : 2단계 경쟁

- 종합쇼핑몰에서 계약업체별 과업설명서, 가격 등을 비교하여 5개 이상의 업체에게 '제안요청서' 발송 후 선정방식(최저가 방식/종합평가 방식)에 따라 계약 업체 선정



※ 나라장터(G2B)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01.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참조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이용시 유의사항 >

- 수요기관에서 5개 이상의 업체에게 “제안요청서”발송 할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 요청 대상으로 자동 선정함 (단, 수요기관에서는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숙박가능업체에 한하여만 제안요청 대상으로 선정)
- ※ 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1억 미만은 제안요청 없이 구매가능
- 선정방식에는 최저가방식과 종합평가방식이 있으며,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평가방법(배점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등을 첨부하여 발송

가) 수련활동·숙박·수학여행 MAS계약 상품 내용

구분	상품	
	기본	선택
수학여행 (제주패키지)	2박3일, 3박4일 : 숙박비, 식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등 포함	항공료, 버스임차료,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
숙박용역	1박2일, 2박3일, 3박4일(숙박비, 식비 포함)	
체험형숙박	1박2일(숙박비, 식비 포함)	체험활동
수련활동용역	1박2일, 2박3일 각 2규격(기본/전문) : 숙박비, 식비,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 포함	
체험활동용역	마을별 체험프로그램(1,000원~15,000원)	

※ 체험활동은 수학여행 일정으로 농어촌마을을 방문하여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체험활동’으로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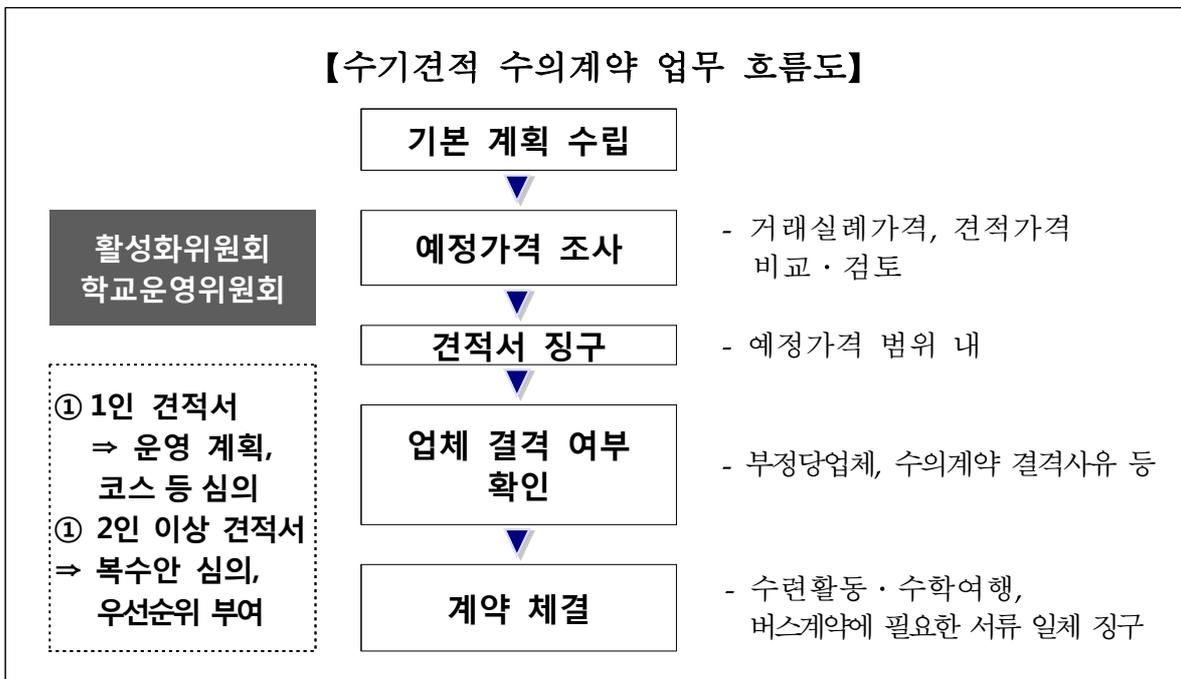
나) 수학여행·수련활동 MAS 이용 시 기대효과

- 학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여행상품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선택·구매하여 행정 소요일수 단축
- 업체는 학교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주가 가능하여 인력·시간·비용 절감
- 학교와 업체 모두 입찰서류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 기존 학교 개별입찰 시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 및 업체 경영난 해소
-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 온라인거래로 대면 접촉의 기회가 적어 비리소지 감소

나. 수의계약

1)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금액기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수학여행은 위탁 업체 선정시 위탁 총액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인솔자 포함)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에 의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가능
- 수련활동은 운송용역, 수련활동용역 각각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에 의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가능



※ 2인 이상 전자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G2B, S2B 이용 가능

< 수의계약 내역 공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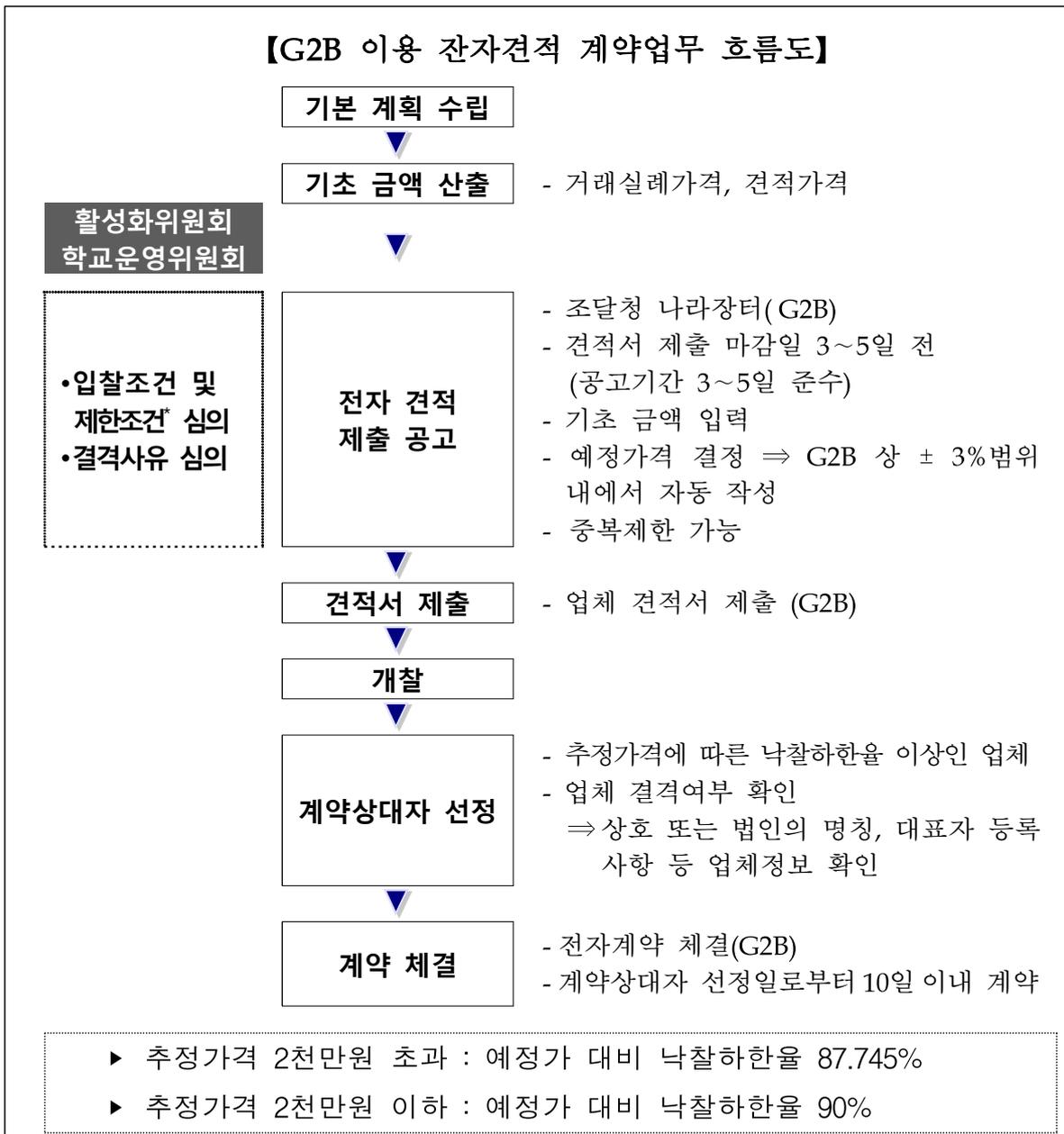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12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1절의 8.계약 정보의 공개
- 공개기간 :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
- 공개방법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등(G2B, S2B, 에듀파인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음)

※ 공립학교 계약의 공개 사항은 기존의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한해 공개 하도록 함 【근거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711 ('14.2.6)】

2)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G2B 이용 전자견적)

-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전자견적 소액수의)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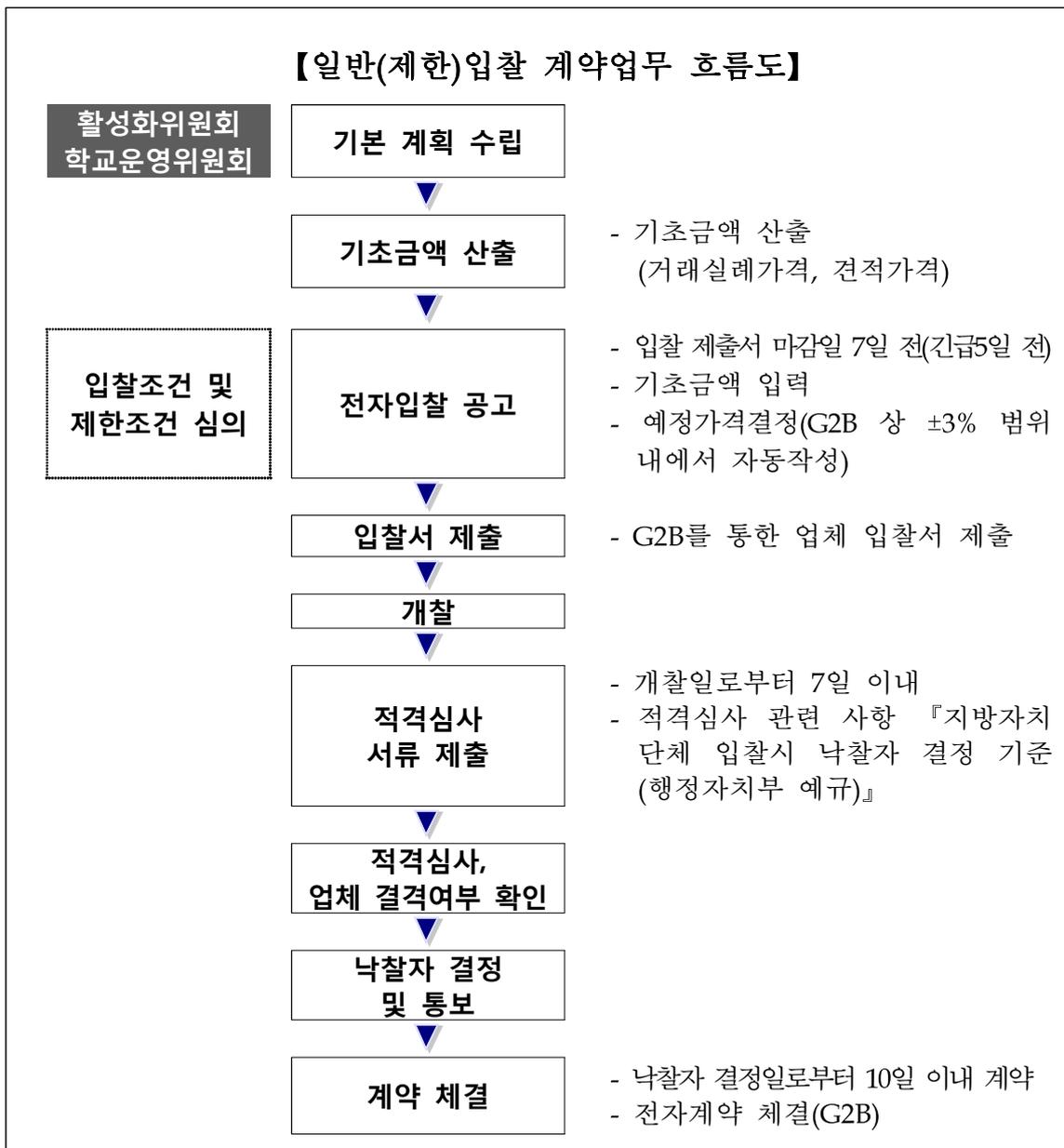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중 **G2B만 이용** 가능함

다. 입찰

1) 일반(제한)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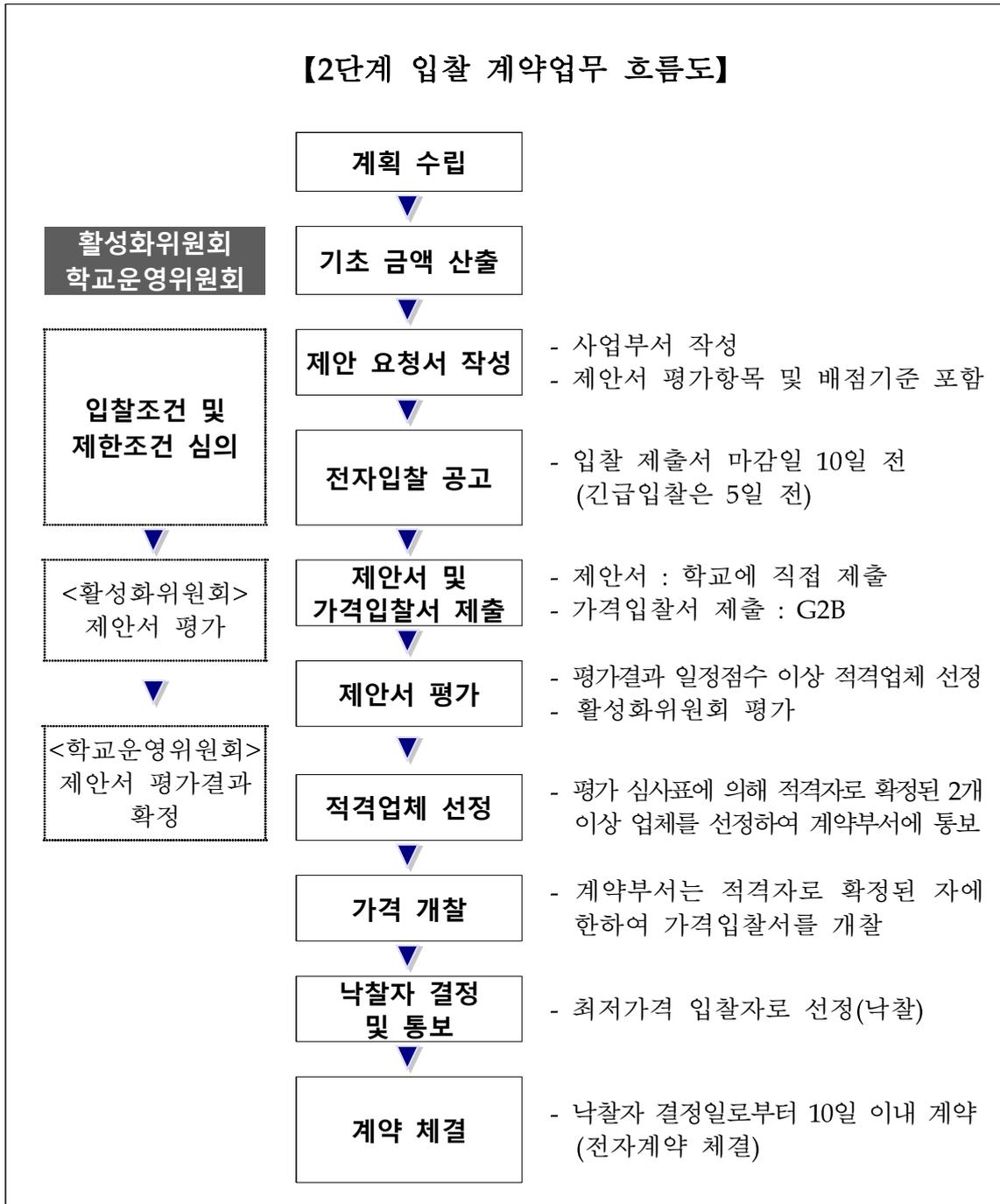
- 예정가격 대비 최저금액을 투찰한 업체를 1순위로 하여 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 결정
-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편법적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 2) 2단계 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가) 전자입찰 공고

- 공고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단, 계약의 긴급성을 인하여 필요한 경우 5일전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2단계 입찰은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공고문 등록 시 (가격·규격 동시 입찰) 유의사항
  - 계약 방법을 '제한경쟁(총액)-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로 입력
  -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을 '전자입찰'로 선택
  - 낙찰자 선정 방법 : 행정자치부 기준 → '최저가'로 선택
  - 수요기관업무 → 용역 → 입찰공고관리 → 기초금액(단가) 입력

###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접수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시에 G2B상으로 전자 접수

### 다) 제안서 평가

- 평가표 작성 ([별첨1]의 평가 배점표 참고)
- 제안서와 제안 설명을 토대로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제안서 평가 시 유의사항 >

- 정량적 평가 분야는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주관적 평가 금지)
- 상위 2개 업체 적격처리는 부적정함(공고서에 명시한 일정 점수 이상 업체에 대해 적격처리)

### 라)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 개찰 실시)
- 부적격업체(일정점수 미만인 자)는 G2B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  
에서 제외하고 개찰함

※ 일정점수에 대한 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함

<참 고>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5)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사업 예정 금액의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은 금지	15	
	객관적 평가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10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10	
	정성적 평가 분야 (65)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10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20	
	주관적 평가	○ 교통 - 차량의 연식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15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20	

### 3. 계약시 구비서류

#### 가.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한 경우

- 여행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견적서(비용 내역서) - 경비는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수학여행 일정표(프로그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를 운수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에 반드시 진위여부 확인
  - ※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158(2015.8.6.) 준수
    -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 대한적십자사 연수 이수증 >

\* 유효기간 확인(발급일로부터 2년)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프로그램 인증 확인서(외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 나. 숙박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여행 계약서(소정 양식)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식단표, 객실 배치도,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숙박업체 현황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다.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견적서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를 운수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에 반드시 진위여부 확인
  - ※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158(2015.8.6.) 준수
  -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 라.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의 경우 '사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세부내역 명시
- 식단표, 객실 배치도(방 배정), 교육 일정표 (프로그램)
- 수련시설 현황표 (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인증서(인증 프로그램) 사본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교육청 관련은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 공통 계약 서류

- 계약시
  -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각서), 사용인장계,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지(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징구)
- 종료후 :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수의계약시 생략 가능), 청구서
- ※ 기타 계약 서류는 지계법 및 시·도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징구

마. 계약 시 유의사항

- 소정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기타사항에 상호 협의사항 명시 가능
  - 동일 행사기간에 타고생 수용여부 문제 등
-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의 관련 대책 포함 여부 확인
- 시설의 숙박정원 : 소재지 시 · 군 · 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종류, 보상 범위 등) 여부 확인
-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및 안전운전 명시(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112신고조치 포함)
-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 차량 디지털운행 기록이란 >

목적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등의 운전 습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교정의 활용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수업자가 안전교육 실시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신규차량의 경우 출고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고, 기존 차량은 '13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
-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 · 제출해야함

활용

- 운행기록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또는 종합분석 결과 양호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하거나, 안전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우선 배차 요청할 수 있음

◁ 종합진단표 ▷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와 개인별 종합진단표 2종 제공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 : 운수회사별 전체특성분석, 위험운전에 따른 안전권 고문, 위험행동 운전자, 차량 목록 등을 제공
- 개인별 종합진단표 : 운전자별 전체특성분석, 위험운전에 따른 안전권고문 제공 (배차정보 입력시에만 제공)

## ※ 운수회사용 종합진단표(샘플)

### 【운수회사 현황정보】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운수회사용)

# 고속(주)

업종 : 시외버스  
분석기간 : 2016년 08월

구분	등록	분석	분석률
운전자	636 명	350 명	55 %
자동차	447 대	182 대	40.7 %

\* 제출된 운행기록자료 및 차량정보를 기초로 분석된 결과임.  
\* 자동차, 운전자 등록기관은 운수공사와 관리정보시스템의 등록 기관임.  
\* 운행기록장치 오동작(흔들 흔들거림, 방향각 초기화 등)으로 인하여 분석결과가 실제 운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운행기록장치 점검 및 시정요함)

### 【종합진단표】

안전운전수준 종합분석

안전운전  
신호 등

교통신호 준수율: 0.259  
인상률: 0.229회, 인종: 6회(1회)

서교차수  
0.157  
인상률: 0.142회, 인종: 6회(1회)

사고/법규위반  
\* 사망 사고: 1건/1명  
\* 중상 사고: 6건/7명  
\* 중상 사고: 6건/29명  
\* 법규 위반: 6건

금호고속(주)의 안전운전수준은 \*보통\*입니다.

금호고속(주)(A)	업종평균(B)	비교(A/B)	안전운전수준
9.4	15.4	0.6 배	보통

(1) 업종: 업종평균 0.34회/차(회) | 보통: 업종평균의 0.34회 이하 | 우수: 업종평균 이하 \* 0.5회 이하 | (2) 업종: 업종평균 1.44회/차(회) | 보통: 업종평균의 1.44회 이하 | 우수: 업종평균 이하 \* 0.5회 이하  
(3) 업종 평균 계산법: 업종 평균 = (업종별 평균값 \* 해당업종 차량 대수) / (업종별 차량 대수 합계) \* 100

■ 위험운전행동 총괄 분석

위험운전행동	발생건수	위험도
교통신호 준수	229	중
서교차수	142	중
사망 사고	1	매우중
중상 사고	7	매우중
중상 사고	6	매우중
법규 위반	6	중

■ 위험운전행동 분석결과

업종 대비 위험운전행동이 [급속], [급가속], [과속] 순으로 많습니다.

■ 요일별 특성

■ 시간별 특성

■ 종합 진단결과

\* 회사의 안전운전수준은 업종평균에 비해 우수하며, 주요 위험행동에 대한 특이 집중할 경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회사의 안전운전수준은 업종 평균에 비해 우수하며, 주요 위험행동에 대한 특이 집중할 경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위험운전행동의 발생 건수는 차량대당, 운전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험운전안전권고문】

위험운전 행동별 특성분석

발생건수	위험운전 행동	관련사고 및 운전습관 개선 권고문
업종평균 이상발생	급속	* 고속도로 정차구간에서 서행 및 경치를 하다가 정체가 풀리는 시점이 되면, 경차에 대한 영향에 급속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수공사자에게 <b>현황과 과속을 살피고 앞차랑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출발하도록 교육</b>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급출발은 버스정류장이나 다른 차량에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운수공사자에게 <b>정류장에서 서서히 출발하여 주행도로로 진입하도록 교육</b>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가속	* 고속/시외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비해 1.5-2배 높아 떨어 볼 수 있으나, <b>바로 앞 차량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b> 급가속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 운수공사자에게 <b>전방을 항상 주시하고 경계로 인한 서행구간을 벗어날 때 바로 앞차 앞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과속으로 운행하도록 교육</b>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속/시외버스가 <b>버스정류장/정류장 진입, 전출시 급가속/하차 시 사고가 발생</b>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객의 거리를 가리고 진입, 전출하도록 운수공사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행동차량목록】

위험운전 순위(자동차)

\* 출력 대상 : 위험 수준이 10회 이상인 자동차 차량입니다.

순위	자동차등록번호	위험운전행동(회)		주요위험 운전행동	운행일수	총 운행거리 (km)	총 운행시간 (시간)
		100km당	실제 횟수				
1	전남75제1913	40.1	178	과속	1	444	10:01
2	전남74제3020	37.4	388	과속	1	1,038	22:10
3	전남75제1856	32.5	174	과속	1	538	10:59
4	전남75제1878	31.1	639	급가속	2	2,054	40:46
5	전남75제1891	29.3	68	과속	1	232	5:23
6	전남75제1070	28.6	198	과속	1	692	14:56
7	전남75제1907	28.4	2,745	과속	17	13,208	318:07
8	전남75제1584	28.3	270	과속	3	982	19:04
9	전남75제1051	28.1	691	과속	4	2,482	58:02
10	전남75제1809	27.5	1,320	과속	7	4,844	105:58
11	전남74제3027	26.8	134	과속	1	500	11:22
12	전남75제1790	26.7	1,978	과속	12	7,414	158:15
13	전남75제1759	25.9	44	과속	1	170	3:32
14	전남75제1733	25.4	602	과속	3	2,367	55:09
15	전남75제1935	24.9	1,154	과속	5	4,631	93:38
16	전남75제4880	24.8	399	과속	2	1,605	36:22
17	전남75제1793	24.8	147	과속	1	593	12:50
18	전남75제1838	24.7	82	과속	1	332	7:12
19	전남75제1918	24.5	210	과속	2	856	18:07
20	전남75제1046	24.5	198	급가속	1	584	12:39
21	전남75제1872	24.3	5,569	과속	29	22,952	501:48
22	전남75제1792	23.9	140	과속	1	586	11:24
23	전남75제1815	23.6	135	과속	1	572	13:15
24	전남75제1052	23.5	4,181	과속	23	17,674	391:07
25	전남75제1736	23.2	644	과속	4	2,778	67:34
26	전남74제3354	23	958	과속	6	4,158	95:38
27	전남75제1795	22.2	570	과속	5	2,569	51:29
28	전남75제1732	21.4	72	과속	1	336	7:13
29	전남75제1861	21	263	과속	2	1,290	27:39
30	전남75제1933	21	364	급가속	2	1,736	33:59

\* 위험 운전자 목록은 배차정보 입력시 제공

## IV.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 1. 현장체험학습 사전준비

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 · 현장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학부모 홍보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차량·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
  - ※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활동안전센터(www.yas.or.kr)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안전가이드 등 참고·활용

- ▶ 교통수단별 안전교육(버스, 선박,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등), 공중시설 이용예절 교육,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 숙소 등 체험시설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활동 참가 시 수련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신체허약 정도 등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
- 인솔자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

- ▶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가급적 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
  - ※ 안전 전문가 :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 인적자원 활용

- 정부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안전디딤돌)을 인솔자·학생이 다운 받아 설치 및 활용법 숙지

나. 미 참가 학생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도한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 잔류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불참자로 결석처리 하여서는 안됨

## 2. 단체차량 이용 사전 점검

- 가.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를 확인  
(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
  - 계약서(통보서)의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 일치여부 확인
  - 계약서(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 나.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감지 및 호송 협조 요청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감지 및 호송 협조 요청 등
  -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부서에 공문 요청

## 3. 단체차량 이용 당일 점검

- 가. 운행 당일 차량을 다음과 같이 안전 점검 한다.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차량점검표는 학교에 보관)
  -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
  -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사 확인,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음주운전·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지도
  - 학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감지 실시  
※ 경찰의 긴급 사건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감지 협조가 어려울 경우 학교 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이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에 신고)
- 나.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 다.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한다.
- 라. 출발 전 학생에게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한다.
-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 안내

####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교육

- 가.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한다.
- 학교 자체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권장
- 나.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학생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다. 수학여행 시 인솔자는 학급당 2명 이상 확보를 권장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활용한다.
-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 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지도사·문화해설사·큐레이터 등 전문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 위탁교육 시에도 인솔자가 반드시 입장하여 교육활동 실시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
  - ※ 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 마.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바.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 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선박·항공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 \*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는 이행을 요구
- 대중교통 이용 시 사전 안전교육(귀가 안전교육 포함) 및 교통 예절 교육 실시
  - ※ 이동 시 사전 모듈 편성(2명 이상)을 권장하고, 가급적 출퇴근시간 등의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이동

사. 해양 수상 활동, 갯벌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 시 사전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해양 수상 활동 사전 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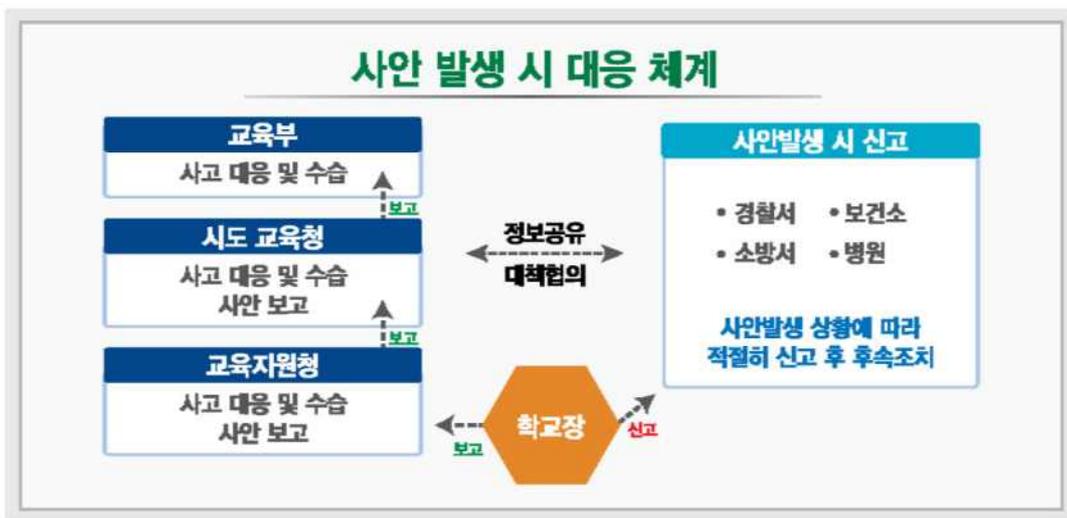
- ▶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 학생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등의 등록여부 확인
- ▶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아.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
  - 학교장은 사전에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실시 장소(급식 장소)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조회 공문 요청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소형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군·구의 인력 운용상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음식 위생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토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
- 동일 원인(동일음식)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 5. 사고 발생시 대응 및 보고

- 가.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한다.
- 나.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SN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한다.
- 다.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사안 발생 즉시 신고 및 학교와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을 즉시 보고
  - ※ 국립학교는 관할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라. 시·도교육청은 사안(고) 발생 인지 즉시 교육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1) 인사사고의 경우(인원수 불문, 경미한 사례포함 즉시 유선보고 후 사안보고)
- 2)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예시]

- 수 신 :
- 발 신 :
- 보고 일시 : 201 . . . .
- 기본 사항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안명		사안 발생일시	
사고 교사 및 학생	<사고학생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송부

### ■ 사안 개요

■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 6. 경비 집행

### 가. 경비 집행 방법

-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
-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학교 법인카드 사용

### 나. 인솔자의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 인솔자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 ▶ 인솔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
- ▶ 여비의 지급 방법, 대상 및 절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정함

- 인솔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 ▶ 활동 실시 전 시간외 근무명령을 득한 자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 ▶ 인솔교직원은 야간 생활지도 근무조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 초과근무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 7. 정산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정산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 한다.

※ 환불 액수가 소액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복지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 V.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 1. 사후 평가 및 결과 활용

- 가.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후에는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평가
- 나. 학교에서는 평가 및 만족도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 계획, 업체 및 장소 선정,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 다.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자율활동(행사활동) 영역에 특기사항을 기록하고, 학생이 체험하고 느낀 소감 또는 보고서 등 학습 체험을 에듀팍에 누적 기록하여 진로 탐색 등에 활용한다.

### 2. 현장학습 평가 결과 공개

- 가. 목적
- 현장체험학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만족도 공개 등을 통하여 업체의 책무성 제고 및 운영 프로그램의 질 개선
- 나. 공개 방법 :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 공개방 탑재
- ※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을 크레존 사이트에 바로 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전국적 수학여행 정보 공유
- 다. 공개 항목 : 수학여행·수련활동 및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이동경로, 학부모 동의율 등 다음 항목을 필수 공개

시도	급별	학교명	활동 구분	시기	대상 학년	이동 경로	참가 인원	1인당 경비	학부모 동의율
서울	초	서울초	수련		6	제주	300	200,000	90%

종류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운송 업체	숙박업소 (수련시설)	이동수단	사고 발생현황	만족도 결과	비고
일괄 계약	○○ 여행사	2단계 입찰	○○ 고속	○○유스 호스텔	비행기, 전세버스	없음	65%	

※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14일 이내 탑재

※ 현장체험학습의 추가 공개 항목 및 운영방식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여 관리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요

#### 가.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

#### 나. 인증대상 : 청소년(만 9세~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

##### ○ 인증을 필히 받아야하는 대상

-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수상, 산악, 장기도보, 위험기구 사용, 사고대비 물질사용, 항공활동)

##### ○ 인증신청 제외대상

- 단순 체험(견학)활동,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등

#### 다. 인증기준

1) 활동유형<sup>1)</sup> :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2) 인증기준

- 공통기준 :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자원운영, 지도자 자격, 지도자의 역할 및 배치,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안전관리 계획
- 추가기준 : 숙박형(숙박관리, 안전관리 인력 확보, 영양관리자의 자격)  
이동형(숙박관리, 안전관리 인력 확보, 영양관리자의 자격, 휴식관리, 이동관리)

※ 위험도가 높은 활동 운영 시 전문지도자의 배치,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추가 확인

#### 1) 활동유형

활동유형	내 용
기본형	1일 3시간 이상 혹은 1일 2시간 이상 2회기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2. 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절차

### 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계획 시 인증관련 확인사항

- 1) 프로그램 검색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http://www.youth.go.kr))
  - 참가대상, 인증번호, 운영기관, 키워드, 지역, 활동일자 등으로 검색 가능
  - 프로그램의 정보(주요내용, 일정·장소, 담당자, 기관정보 등) 확인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확인 : [www.youth.go.kr](http://www.youth.go.kr)
- 2) 운영 가능 일자 및 프로그램 내용 추가 확인

### 나. 프로그램 위탁 시 점검사항

- 1) 인증서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동일한지 확인(인증사항, 증빙서류)
  - 활동실시일 14일 이전까지 계약이 최종 완료되어야 함
- 2) 위탁 계약 중 인증사항과 다른 사항이 확인 시 부정운영 제보 가능
- 3) 인증프로그램 일정 중 일부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학교의 사정에 의한 일부 프로그램 변경은 사전 승인 시에만 가능함
  - 오리엔테이션 내용 변경, 학교 명사 특강 및 특별 프로그램 추가 등
  -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주요 프로그램, 총 운영시간은 변경 불가

#### ※ 인증프로그램의 특징

- ☞ 청소년의 발달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됩니다.
- ☞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특별기준이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현장 점검을 수시 진행하여 인증사항과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전문심사원이 점검합니다.
- ☞ 활동장소의 정기적 안전점검, 안전전문인력 의무배치, 지도자·참가자 안전 교육 매회 사전 실시, 관련 범죄경력 조회, 응급의약품 필수 배치 등으로 안전합니다.
- ☞ 청소년 활동유형 및 내용에 따라 전문지도자·유자격자 배치기준과 보조 지도자를 포함한 배치규정을 두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행정처분이 진행(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되어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해 활동에 따른 배상책임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후 확인사항

1) 위탁 계약 중 인증사항과 다른 사항을 확인 시 부정운영 제보

- 제보방법 : 인증정보시스템(yap.youth.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52~9)

2) 참여자 안전관리 및 참여기록 등재를 위한 참여 학생 명단 운영기관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자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반

- 청소년의 참여기록은 국가가 관리·제공(여성가족부 장관명의)하며 일괄 출력 가능

※ 국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 관련 조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수련활동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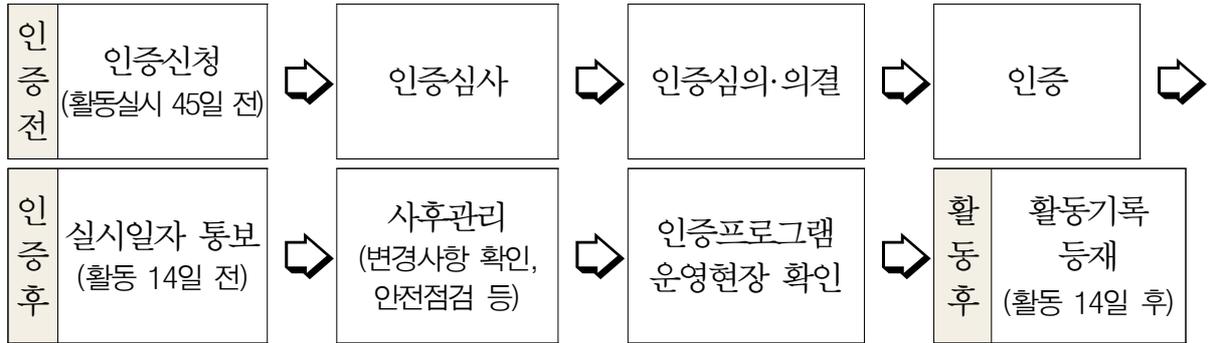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참여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활동진흥원 : 법 제6조제1항에 다른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참고1] 인증제 운영절차



- 자세한 사항 확인 및 문의(불편/건의사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 02-330-2852~9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yap.youth.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ww.kywa.or.kr

[참고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및 인증마크

[별지 제17호 사서] - (제36조 관련)

발급번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 인 증 번 호 : \_\_\_\_\_

□ 운 명 기 관 명 : \_\_\_\_\_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_\_\_\_\_

□ 활 동 명 : \_\_\_\_\_

□ 주 요 활 동 장 소 : \_\_\_\_\_

□ 인 증 기 간 : \_\_\_\_\_

□ 참 여 대 상 : \_\_\_\_\_

□ 참 여 인 원 : \_\_\_\_\_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인증마크**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운영기관명과 함께 사용)

[참고3] 인증수련활동 검색방법

1) 프로그램 검색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청소년 청소년활동검색 활동사업안내 복지보호안내 고객센터 공지/뉴스

내게 맞는 활동찾기 자유학기제 활동찾기 수능후 활동찾기 내가 다녀온 활동후기

### 내게 맞는 활동 찾기

전체활동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 민간시설의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단체 개별 가족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기관유형 전체 전체

활동분류 일반 방학중 수능후 자치 동아리

참가대상 전체

지역선택 전체 선택

연령선택 연령선택

활동시기 2015-09-18

키워드검색 활동명 기관명을 입력하세요

추가선택 +

좌측 그림을 선택하면 참가대상, 연령, 지역이 우측에 자동선택돼요

기관 유형을 선택해요

블릭하면 영역, 인증, 신고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정렬순서를 변경해요

보기방법을 변경해요

검색

등록순 인기순 참가비순 활동일순 마감일순

리스트 이미지 8개씩 보기

**덕유산 캠프 - 가슴을 열러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보이고 활동 찜하기, 기관 찜하기도 돼요~

http://www.ebreaknews.com

활동일 2015-08-21~10-31

모집상태 상시모집 지역

인원 40명 참가비 0

연령 중 고

등록일 08-19 신고

**꿈을찾는 도전! 복극성 캠프**

모험개척

여름의 별자리

활동일 2015-08-22~10-31

모집상태 상시모집 지역

인원 50명 참가비

연령 중

등록일 08-19 인증신고

인증되거나 신고된 활동이면 마크가 표시돼요~

**청소년, 난타아카데미**

문화예술

활동일 2015-08-22~12-31

모집상태 상시모집 지역

인원 40명 참가비 10,000

연령 초 중 고

등록일 08-19

**나라사랑 환경사랑 '지킴이운동...**

환경보전

활동일 2015-08-20~09-30

모집상태 상시모집 지역 포항시

인원 30명 참가비 0

연령 중

등록일 08-12

**2015 무안군청소년수련관 겨...**

기타

활동일 2015-01-01~08-31

모집상태 상시모집 지역

인원 123명 참가비 0

연령 임

등록일 08-03 신고

**"나를 깨우는 리더십 캠프"임...**

건강보전

활동일 2015-08-01~08-31

모집상태 상시모집 지역

인원 11명 참가비 0

연령 초

등록일 08-03 신고

**즐거운 나라사랑 활동 테스트 ...**

환경보전

활동일 2015-07-01~09-30

모집상태 상시모집 지역 포항시

인원 40명 참가비 0

연령 초 중

등록일 07-31

**어린이 "인체탐험" 활동**

기타

활동일 2015-04-01~12-31

모집상태 모집마감 지역

인원 165명 참가비 1,800

연령 초

등록일 07-28 신고

« < 1 2 3 4 5 6 7 8 9 10 > »

## 2) 프로그램 정보 확인 : 인증번호, 참가대상, 모집방법, 일정, 장소, 담당자, 기관정보 및 위치, 활동사진, 지자체 신고여부 등

※ 해당기관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 추가열람 가능

### 내게 맞는 활동 찾기

HOME > 청소년활동검색 > 내게 맞는 활동 찾기

페이스북 트위터 URL 복사

#### [진로탐구] 음(DNA)에서 꿈(RNA)으로 고등학교



#### 추가이미지



페이스북 트위터 URL 복사

분류	인증시스템 연계	인원 및 연령	300명 <span style="color: green;">고</span>
지역	전라북도 김제시	참가비	105,600
활동일시	2016-11-14 ~ 16 <span style="background-color: #e0e0e0;">외 2건</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e0e0e0;">열기</span>	모집기간	개별문의
참가대상	개별/단체모집	차량운행	-
인증번호	제 4692 호 <span style="background-color: #e0e0e0;">바로가기</span>	신고번호	2016-30의 3건 <span style="background-color: #e0e0e0;">바로가기</span>
인증유효기간	2019-06-23까지	숙박여부	숙박형
반복여부	-		
기관명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전화번호	063-540-5600
담당자	<span style="background-color: #e0e0e0;">[Redacted]</span>	담당자이메일	<span style="background-color: #e0e0e0;">[Redacted]</span>
관련사이트	nyac.or.kr/	팩스번호	063-540-5603
첨부파일			

\* 해당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직접 등록하였으며 문의 및 신청은 기관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추가등록하기 기관찜하기 활동찜하기

### 활동정보 기관정보

인쇄

#### 활동목표 및 상세내용

'음(DNA)에서 꿈(RNA)으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분야, 즉 예술, 농업, 생명과학, 그리고 생명공학 체험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갖는 진로갈등 및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청소년의 미래기대나 진로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미래를 결정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 청소년은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DNA를 만들고 그 색(음)을 뒤워서 자신만의 꿈(RNA)에 다가서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는 마당(안전교육 및 인증과 생활 안내) 및 마음열기,
- 진로이식 향상 프로그램(꿈을 이룬 사람들, 직업과 나),
- 선택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 공통: 생명과 미래(농업생명체험관)
- 농업: 생명을 품은 씨앗
- 과학: 인류의 약 아스피린
- 예술: 생명을 그리는 이야기(수화)
- 지평선 농번댄스(댄스)
- 우리 직업 있어요(상황극)
- 생명들의 길(공동체 활동)
- 생명들의 외침(레크리에이션)
- 청(소) 공감마당(보이는 청소년 라디오)
- 맺는 마당(캠프 마무리 및 설문조사)

### 활동정보 기관정보

인쇄



크게보기 Q

**기관명**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복지시설로서, 농업생명을 통해 미래와 더불어 행복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1일에 전북 김제시 북곡면 맞은편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생애 갈수록 미래 농업의 가치 인식 그리고 핵심역량을 키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역사적으로 통으로 농농화를 꽃피운 전라북도 김제시에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 북곡계 인근 3만8,510 평방미터 부지에 총 253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었으며, 432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강당, 세미나실 등 활동관, 첨단농업 시뮬레이션용 무인관측용 체계시설과 42m 높이의 지평선전망대 등을 갖췄습니다.

**기관소개** |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평선 여행가(당일, 1박2일), 청소년 대상의 '복합계 체험가(2박3일)'와 녹색 과학가(3박4일), 청소년지도자나 교사 대상의 농업생명지도자(4박5일)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 진행되는 농업생명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실함과 농업생산 기술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자기가 지구생태계의 일부분임을 깨닫고, 이웃과 함께 살아간을 느끼며, 자연사랑의 마음을 키우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입니다. 현재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농업생명선 인류 생존의 씨앗으로 슬슬 형성하고 식량도 생산하며, 부리가 매일 먹고 있는 밥식반 비트 뿌리 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와 한 몸임을 느끼면서 일상 속에서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영소 명종 영인이 있는 농업생명 체험센터가 되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참의적인 인재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세계의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즐거운 농업생명 체험센터될 것 입니다.

**사업자번호** | 403-82-14276

전화번호	063-540-5600	기관형태	청소년수련원
팩스번호	063-540-5603	대표자성명	최희우
홈페이지	nyac.or.kr/		

#### 활동장 위치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 1. 신고제 개요

#### 가. 개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나. 목적

- 1)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자가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을 점검
  - 2)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 방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3) 신고 수리된 수련활동 정보를 공개하여 청소년, 교사 등 모든 사람이 쉽게 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
- 다. 신고대상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여 청소년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인 경우

### 2. 신고수리된 수련활동 정보 확인하기

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의 [교사·지도자 단체활동찾기]



나. 지역, 연령, 활동시기 등 선택 후 [신고여부]→[신고]로 클릭 후 검색



다. 검색된 프로그램에서 [신고] 표시 확인

<p>2015년 고등학교 수련활동(...)</p> <p>기타</p> <p>활동일 2015-12-02~12-04 모집상태 모집마감 지역 천안시 인원 200명 참가비 0 연령 고 등록일 11-29</p> <p><b>신고</b></p>	<p>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amp;qu...</p> <p>교류</p> <p>활동일 2015-12-15~12-17 모집상태 - 지역 성남시 인원 11명 참가비 0 연령 중 고 등록일 11-25</p> <p>신고</p>	<p>2015 희망드림연차</p> <p>기타</p> <p>활동일 2015-12-12~12-13 모집상태 - 지역 종로구 인원 80명 참가비 0 연령 고 등록일 11-24</p> <p>신고</p>	<p>청소년리더십캠프 (1박2일)</p> <p>모형개척</p> <p>활동일 2015-12-11~12-12 모집상태 - 지역 평창군 인원 50명 참가비 43,000 연령 중 고 등록일 11-17</p> <p>신고</p>
<p>나에게 도전, 세상에 도전</p> <p>모형개척</p> <p>활동일 2015-11-30-12-06 모집상태 - 지역 서대문구 인원 28명 참가비 400,000 연령 고 등록일 11-12</p> <p>신고</p>	<p>꽃동네사랑체험캠프</p> <p>봉사협력</p> <p>활동일 2015-12-28-12-29 모집상태 - 지역 울성군 인원 100명 참가비 36,700 연령 고 등록일 11-04</p> <p>신고</p>	<p>2015.작은나눔큰행복 물레산...</p> <p>문화예술</p> <p>활동일 2015-12-23-12-23 모집상태 - 지역 성남시 인원 140명 참가비 0 연령 고 대 입 등록일 11-02</p> <p>신고</p>	<p>청소년성장지원 우주과학역량...</p> <p>과학경보</p> <p>활동일 2016-02-01-06-30 모집상태 - 지역 고송군 인원 140명 참가비 0 연령 초 중 고 등록일 10-28</p> <p>신고</p>

라. 프로그램명 클릭 후 세부 내용 확인

- 참여하고자하는 프로그램명을 클릭하여 주요 프로그램 내용, 인증수련활동 여부, 보험 가입 사항, 지도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

[부록 3]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확인
안전 관리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상황시 대처 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교육여부)	
	④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⑤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① 차량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② 식중독·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	① 관광버스에 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 및 해당계약건별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였는가?	
	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구분	점검 항목	확인
	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	
	⑤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여행지 이동 업무	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④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역·여객선 터미널·공항 도착 전 업무	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는가?	
역·여객선 터미널·공항 도착 후 업무	① 객실 배정표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부록 4]

##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점검 항목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하였는가?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통안전 점검 항목 및 안전교육

### 교통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차량 상태 점검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차량 내부는 청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운전자	교통 법규 준수	운전자 음주 감지를 실시하였습니까?(경찰 협조)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운전자 미팅	대열운행(2대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 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운행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학생 교육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운행 중 이동금지 및 비상시 대처요령 교육(대피 순서 등)을 하였습니까?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휴게소 안전		위급 상황 시 비상 망치(형광용)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휴게소에서 지켜야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진 차량 주의, 휴게소 내 뛰지말 것) 휴게소 출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구축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학생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까?		
기타	기타	구급낭을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었습니까?		
		보호 필요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습니까?(상비약, 자리 배치)		



## 차량 서류 및 상태확인 이렇게 하세요

### 가. 차량 출고일자(연식) 확인

- 1) 학교에서 특수조건으로 제시한 연식과 운수회사에서 제출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의 최초등록일(연식)을 확인
- 2)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의 일치여부(번호판)를 확인

### 나. 차량 종합보험 가입여부 및 차량검사 확인

- 1)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종합결과에 '이상없음'을 확인  
(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

### 다. 차량 위생 점검 및 냉·난방 장치 확인

- 1) 차량 청결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 2) 악취는 두통, 구토, 멀미 증상의 원인이 되므로 악취여부를 확인
- 3)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라.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부착 확인

- 1)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 (257mmX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수학여행·수련활동(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수련활동(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안전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 가. 안전벨트 착용 및 운행 중 이동 금지 교육

- 1)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및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 2) 차량 출발 후 도착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교육을 실시
- 3) 차량 출발 후 완전히 정차하기 전까지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운행 중에는 이동 금지 교육을 실시

### 나. 개문 가능한 창문 위치를 확인 및 교육

- 1) 개문 가능한 창문의 위치를 확인
- 2) 개문 가능한 창문 주변에 탑승한 학생에게 쓰레기 투기 금지, 손 내밀지 않기, 창문을 열고 장난하지 않기 등을 교육

#### 다. 소화기 위치 확인 및 사용법 교육

- 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
- 2) 사전에 모든 학생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
- 3)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인근의 학생을 지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화재를 진압
- 4) 주변에 교사가 있으면 교사가 화재를 진압하며 진압할 수 없는 화재일 경우 학생들을 신속히 대피

#### 라.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위치 확인 및 사용법 교육

- 1)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
- 2) 사전에 모든 학생에게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사용법을 교육
- 3) 비상망치(형광용) 주변에 학생을 지정하여 비상시 신속히 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도록 교육
- 4)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며, 평상시에는 만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

#### 마.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 1) 휴게소에서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보행로를 이용하여 이동
- 2) 특히 이동차량, 주차, 후진차량에 주의
- 3) 학생들에게 하차 전 휴게소 출발 시간을 공지



### 운전자 및 운행 중 확인 사항

#### 가.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

- 1)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운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배차된 운전자와 동일여부 확인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가능

#### 나. 음주 감지 요구 : 최소 1주일 전 요청

- 1) 해당학교가 속한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 감지 실시 요청
- 2) 2일, 3일째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숙소 출발 전 음주감지 요청

#### 다. 대열운행 금지

- 1) 대열운행(새떼운행)이 아닌 징검다리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 2)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

#### 라.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 1)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 2)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금지
- 3)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 마. 내리막길 안전 제동

- 1)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 2)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바.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일정 금지

- 1)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 2)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경유, 도착지) 및 시간 확인
- 3) 계절, 지역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 4)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



### 기타 사항

#### 가. 사고발생 시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활용

- 1) 교통사고 발생 시 인솔 교원은 소방서(119) 및 인근 경찰서(112)에 즉시 연락
- 2) 동료 인솔자, 학교장, 교육청에 즉시 보고
- 3) 부상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림

#### 나. 구급낭 준비

- 1) 비상 상비약 및 구급약품 준비
- 2) 내용물과 약품사용 방법을 전면에 부착

#### 다. 멀미하는 학생 배려

- 1) 멀미하는 학생을 대비하여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멀미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차량 좌석배치 시 멀미 우려 학생을 배려

#### 라. 차량 안전관련 서식 및 자료

- <양식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양식2> 교통학생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감지 등) 요청서
- <참고자료>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양식1>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2014.11.24-02186-00001

이용과목	안전한	이용(계약)기간	2014.11.25~2014.11.26(2일)		
운송사업자명	(주)새기머행사<연합>	대표자/사업자번호	임준교 / 124-81-99604		

조회결과

순번	운전자명	제 용 일	운전자의 교육이수일	버스운전 자격유무	음주운전 적합일	교통법규 위반일	종합결과
	자동차번호	소유자명	최초등록일 (차령)	책임보험 종료일	종합보험 종료일	자동차검사 만료일	
1	강성일	2013.05.24	-	유	-	-	이상없음
	경기71바4602	(주)새기머행사	2010.05.18(4년)	2015.04.12	2015.04.12	2015.05.17	이상없음

주) 1. 교통안전정보는 조회일자 및 자동차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2. 종합결과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계 및 취소 등이 반영된 사항이며,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는 별개의 자격 상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전제기간)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보험기간 경과시 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1일입니다.  
 4. 운전자의 교육이수는 조회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사항이며,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조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기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 조 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4.11.24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운행 팁 10가지

1. 대차량 자동차와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3. 휴게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대일운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을 하지 않도록 한다. 7. 운행중 안전띠를 풀거나 자석을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9. 휴식중(야간)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2. 음주가무, 과요반주기 사용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출발전(휴게소 이용 후)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 한다. 6. 운전자가 충분히 쉬 수 있도록 배려한다(2시간 운행 후 휴식) 8. 운전자의 졸음 및 피로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10. 운행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	---

1/1

\* 왼쪽 '출발'에서 오른쪽 '목적지'까지 알맞으면 시정입니다

<양식2>

**학생 현장체험학습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감지 등) 요청서**

○○학교장(직인)

※ 작성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연번	항목	실시내용			
1	기간	년 0월 0일~0월 0일 [0박 0일]			
2	장소	목적지 : ○○수련원 주소 : ○○도 ○○시 ○○구 ○○동 ○○번지			
3	대상	총 000명 (학생 000명, 인솔자 00명), 버스 00대			
4	학교명 (관할경찰서)	○○학교 (○○경찰서)			
	학교주소 및 연락처	○○시 ○○구 ○○동 (☎ 02-000-0000)			
5	서울구간	(예시) 남산동 2가→3호터널→양재IC 【시계, 15km】			
6	대표인솔자	성명 : ○○○ (휴대전화 000-000-0000)			
7	활동내역 및 이동코스				
실시일	출발시간	출발지	이동코스	도착시간	비고
1일	08:00	○○학교	□□IC→서해안고속도로→○○IC→목적지	16:00	학교 앞 교통정리, 운전자 안전교육, 음주감지 요청
2일			차량 이동 없음		
3일	13:00	○○수련원	역코스	15:30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음주감지 및 가능한 범위에서 에스코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구 분	관할지역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1	팩스번호1
본사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1577-0990		
서울 지역본부	서울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번지	(02)375-1273	02-375-1274	0502-384-5344
경인 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297-9121	031-297-9124	0502-384-5366
	경기북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1-9번지	(031)837-0700	031-837-7604	0502-384-5368
	인천	인천남동구간석3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	(032)833-5000	032-833-5002	0502-384-5383
중부 지역본부	대전충남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번지	(042)933-4324	042-933-4329	0502-384-5396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번지	(043)265-9575	043-262-6551	0502-384-5398
	강원	강원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033)262-3361	033-262-3365	0502-384-5384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경북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번지	(053)794-3811	053-794-3817	0502-384-5402
부산경남 지역본부	부산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051)324-2291	051-328-2296	0502-384-5417
	경남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8번지 진주종합경기장내 6번출입문	(055)758-2500	0502-384-5482	
	울산	울산 남구 달동 1296-2번지 향사랑병원 빌딩 8층	(052)256-9372	052-256-9376	0502-384-5310
	제주	제주 제주시 도련2동 568-1번지	(064)723-3111	064-723-3120	0502-384-5431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	광주 남구 송하동 251-4번지	(062)674-0300	062-674-1303	0502-384-5441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번지	(063)212-4740	063-211-7271	0502-384-5433

[부록 6]

## 청소년 단체 현황

(2016.2. 기준)

순	청소년 단체	소관부처 (소관법령)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1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02-3705-3705 (02-3705-3777)	rcy.redcross.or.kr
2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43-221-2918 (043-221-2919)	www.chunghyo.or.kr
3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교육부 민법제32조	02-2662-7360 (02-2662-7361)	www.mrakorea.or.kr
4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23-6165 (02-723-6167)	www.paramita.or.kr
5	한국 4-H본부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02-428-0451 (02-428-0455)	www.korea4-h.or.kr
6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02-733-6801 (02-738-3013)	www.girlscout.or.kr
7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02-739-6369 (02-722-6455)	www.yak.or.kr
8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738-1501 (02-732-5843)	www.rotarykorea.org
9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02-6335-2000 (02-6335-2020)	www.scout.or.kr
10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특허청 민법제32조	02-569-7231 (02-569-7228)	www.kyic.org
11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제32조	02-2663-4163 (02-2663-4177)	www.civo.net
12	한국청소년연맹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02-841-9291 (02-845-8138)	www.koya.or.kr
13	한국항공소년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제32조	02-953-7543 (02-953-7545)	www.yfk.or.kr
1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02-886-8522 (02-886-8521)	www.sekh.or.kr
15	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전라북도 민법제32조	063-272-7022 (063-271-7040)	www.cya21.org
16	성산청소년효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민법제32조	032-438-4293 (032-421-4783)	www.sungsan1318.or.kr
17	세계화교육문화재단	외교부 민법제32조	02-312-3550 (02-392-3560)	www.globaleducation.or.kr
18	숲사랑소년단	산림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02-968-0868 (02-968-0818)	www.greencause.or.kr
19	한국YWCA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민법제32조	02-774-9702 (02-774-9724)	www.ywca.or.kr
20	홍사단	교육부 민법제32조	02-743-2511 (02-743-2515)	www.yka.or.kr
21	청소년교화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735-8165 (02-722-6623)	www.yeba.or.kr
22	푸른나무 청예단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585-0098 (02-585-0038)	www.jikim.net

[부록 7]

## 음식 안전 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 식사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b>답사</b>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확인하였습니까?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가 양호합니까?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기, 파리 등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b>계획</b>	관할청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까? (필요 시 해당 시군구에 위생 점검 요청)	
	식단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b>시행</b>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합니까?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약속된 식단표와 식사가 일치합니까?	
	음식의 질 및 조리 상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인솔자와 학생의 식사가 동일합니까?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물을 먹도록 지도하였습니까?	
	식사 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까?	



## 식사 및 위생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식사와 관련된 계약서(또는 승낙사항)를 작성
- 나. 해당 업소의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단체급식소)를 확인
- 다. 식단표대로 식사가 나오는 지 일치여부 등 확인
- 라. 조리된 음식의 맛, 질감, 조리 상태 등을 식사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 및 식사지도
- 마.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 바. 학생 개인이 음식물 및 간식류의 휴대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으며 숙소에서 먹지 않도록 지도
- 사. 해당 시군구에 해당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를 사전에 확인
- 아. 특정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확인하여 식단표와 학인 후 현장에서 지도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이렇게 조치 하세요

- 가. 복통, 설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의무실로 이송
- 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이송 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다. 동일원인 동일증세를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복통, 설사 등) 2명이상 발생 인지 즉시 보건소(교육청)에 신고
- 라.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면 학교단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후속조치와 행정지원
- 마. 식중독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 등을 모두 수거하여 보관
- 바. 원인규명을 위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 사. 참가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



## 기타 사항

- 가. 식사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음식물로 인한 사안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식사 지도 중에 매 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
- 다. 학생과 인솔자는 같은 식단으로 식사해야 함
- 라. 모든 식사 전 인솔자가 먼저 취식하여 냄새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학생들에게 제공

[부록 8]

## 숙소 안전 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 숙소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b>답사</b>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습니까?	
	방안의 TV는 청소년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치되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설치물들은 안전합니까?(가구, 유리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3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청결합니까?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양호합니까?	
<b>계획</b>	숙소의 안전 위해 요소를 계획에 명시하였습니까?	
	학생 및 교사 숙소 배치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생과 교사 숙소는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b>시행</b>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베란다 등 위험한 곳에는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숙소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 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배치하였는지 확인
- 나. 숙소를 사전에 직접 점검하여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
- 다. 숙소 내 방송 시설 유무를 확인
- 라. 숙소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
- 마.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이도록 함
- 바. 안전 위해 요소는 계획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교사들의 주의를 당부
- 사. 점검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업체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



### 숙소 관련 안전교육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입소 전 학생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
- 나.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교육을 하고 생활 규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함
- 다. 숙소에서는 특히 친구 사이에 장난을 삼가며,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
- 라. 위험하거나 고가의 물건은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전에 확인
- 마. 허약 학생, 보호를 요하는 학생, 문제 학생 명단은 지도 교사 모두가 공유하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함
- 바. 야간 지도계획(불침번)을 세우고 야간 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 하며 학생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지도
- 사. 숙소에서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



### 숙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사고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먼저 한 뒤, 119 및 경찰서에 신고
- 나. 화재 발생 시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고개를 숙이고, 대피 경로로 신속히 이동
- 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안을 간략히 메모
- 라.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 기타 사항

- 가.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영업 배상 책임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보험 가입 업소를 권장
- 다.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객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표시

## 화재 예방 안전 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 화재 예방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답사	3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계획	화재 및 기타 재난 사항 발생 시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위급 사항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시행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학생들의 화재를 일으킬만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입소 전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발생 시 대피 경로를 안내
- 나.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확인
- 다.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 라.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마. 완강기 및 소화기의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
- 바. 학생들이 화재를 일으킬 만한 물건은 소지하였는지 확인

### 화재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119로 즉시 신고
- 나.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동선을 즉시 파악한 후 학생들을 대피시킴
- 다. 낮은 자세로 대피하며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입에 대고 이동
- 라.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
- 마. 완강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한 명씩 사용

### 기타 사항

- 가. 수련활동의 경우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화재안전 교육을 수련활동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

## 활동별 안전 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 1. 수상활동



#### 수상활동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정확한 인원 파악(수시확인)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적합(건강상태 등) 여부는 파악하였습니까?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기구 등록사항(등록증, 조종자 면허증)을 확인하였습니까?	
사전 안전교육(위험지역 안내 등) 및 입수 전 준비운동은 실시하였습니까?	
안전장비(구명동의) 착용 여부는 확인하였습니까?	
입수 시간을 준수(식사 후 입수 시간 준수 포함) 하였습니까?	
위험지역 활동 통제 등 학생 수상활동 중 입장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현지 기상상태(적정 수온 등)에 따른 수상활동 실시를 수시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수상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활동 전 반드시 준비운동 등 해당 활동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안전수칙 및 위험 지역안내와 통제) 교육 실시
- 나. 각종 장비(구명동의 등)의 점검과 착용상태 확인
- 다. 활동 전 기상상태 및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
- 라. 수상안전요원의 배치여부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수송을 위한 인근 의료시설 위치 파악 및 숙지
- 마. 인솔자 응급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과 현장관리 계획 수립



####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나. 해양 사고 발생.목적 시 가장 신속하게 구조 받을 수 있는 119구조대(해양 122)로 신고



#### 기타 사항

- 가. 익수자 등의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방법의 숙지도 중요(\*대한인명구조협회: [www.ksa.kr](http://www.ksa.kr))
- 나. 활동 중 수시로 인원점검을 통한 학생들의 개인행동 여부 등 통제 및 관리에 신경써야함



## 물놀이 안전 교육 자료

### 물놀이 안전 수칙

-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다.
- 물에 들어가기 전 수온을 파악한다.
- 기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소나기 내릴 때, 번개 또는 천둥이 칠 때, 안개가 심할 때 등은 활동을 중단한다)
- 갑작스런 이상 너울, 파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활동 장소 구역을 정해주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활동하도록 한다.
- 물의 깊이와 흐름을 알 수 있는 곳에서만 활동한다.
- 이안류(해안에서 바다로 급히 역류하는 물의 흐름)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센 곳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폭우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활동을 한다.
- 식사 후 최소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활동한다.
- 참가 인원, 활동 인원, 휴식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몸에 이상이 생긴 학생은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활동을 금지시킨다.
- 위험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한다.
-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춘다.
-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 때 조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다른 통신장비(호루라기, 부표)를 갖춘다

### 물놀이 사고 대처 방법

- 사고 발생 시 수상 활동 참여 인원수와 구조된 인원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 사고 발생 시 인솔선생님과 담임선생님께 보고하도록 한다.
- 인솔책임자 및 인솔자는 돌발적인 재난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히 조치한다.
- 인솔책임자 및 인솔자는 해양긴급신고번호(122), 119 구조대, 인근 경찰관서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학교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 발생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한다.

## 2. 갯벌활동

### 갯벌 체험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학생들의 체험 장비(발에 맞는 장화, 긴팔 옷, 여벌 옷, 챙이 넓은 모자, 면장갑, 자외선차단제 등)는 확인하였습니까?	
자체 안전요원들의 통제와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갯골 주변에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지 기상상태(안개 등)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지정된 체험 장소를 벗어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갯벌 체험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사전 답사를 통한 지정된 장소와 안전위험 상황을 반영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
- 나. 반드시 교사도 혼자서는 활동하지 않으며 학생들 또한 혼자서 체험장소(갯벌)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다. 활동 전 기본적인 체험요령과 장비 준비 상태 등을 점검

### 상황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나. 응급상황인 경우 119구조대에 알려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로 침착하게 대응

### 기타 사항

- 가. 맨발로 체험하지 않도록 하며 샌들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양말을 착용
- 나. 자외선에 의해 화상을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수



## 갯벌 체험활동 안전교육 자료

### □ 갯벌체험 안전사고 대비 방법

- 어민들이 갯벌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로 출입하며,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않는다.
- 갯벌에 갯골이 있는 경우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밀물시 갯골에 물이 먼저 차 오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갯골 주변에는 갯벌의 함수율이 높아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접근하지 않는다.
- 갯벌에는 절대로 어린이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어른도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오며,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 갯벌에는 맨발로 들어가지 않는다. 발에 잘 맞는 장화를 착용하며 샌들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양말을 착용한다. 갯벌에는 어패류의 패각 등이 있어 맨발로 출입할 경우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갯벌체험 시 되도록 긴팔 옷을 착용하며, 창이 넓은 모자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썬크림을 발라 화상을 예방하고 식수를 준비해 탈수를 예방한다.
- 갯벌체험 시 갑자기 안개가 낄 경우 만조 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오고, 방향을 잃었을 경우에는 갯벌에 조류로 인해 생긴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 3. 산행 활동

#### 산행 활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구급약과 기본 등산 물품(산행지도, 복장 등 기본 장비와 식수, 음식물) 준비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학생들의 산행 전 준비운동은 실시하였습니까?	
인솔계획(행렬의 선두, 중간, 후미 및 낙오자 인솔대비)에 의한 안전요원 배치상황은 점검하였습니까?	
산행 시 유의사항(안전수칙과 코스 설명)은 교육하였습니까?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 체계는 확인(산행 중 수시로 위치표시판 확인) 하였습니까?	
수시로 인원 점검을 통한 학생들의 상황(건강, 대열 이탈 등)은 점검하였습니까?	
수시로 양손에 물건을 쥐고 걷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현지 기상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 산행 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사전 답사를 통한 제한구역이나 안전위협 상황을 반영한 산행 일정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
- 나. 무리한 산행코스는 잡지 않으며 학년단위의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학급 단위의 산행이 안전함
- 다. 활동 전 기본적인 산행방법과 장비 준비 상태 등을 점검
- 라. 철저한 인솔계획으로 길어진 행렬로 인한 통제 및 관리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함
- 마. 산행 중 수시로 인원점검을 통한 학생들의 인원수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낙오로 인한 임시 하산계획 등)을 수립

####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나. 응급상황인 경우 지도와 위치표시판의 확인을 통해 인근 산악구조대나 119 구조대에 알려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로 침착하게 대응



## 기타 사항

- 가. 봄철, 가을철 산행을 원칙으로 하고 무더운 여름이나 겨울산행은 지양
- 나. 인솔 시 선두의 인솔자는 산행코스를 숙지하고 되도록 유경험자를 배치하며 중간 책임자도 두어 적절한 산행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
- 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익숙하지 않은 산 속에서의 위치 파악을 위해 지도와 등산로 중간 중간에 있는 위치표시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
- 라. 일기 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수립



## 산행 활동 안전교육 자료

- 산행 시에는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천천히 걷고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말아야 한다.
-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을 더 조심해야 한다.
  - 내려갈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굽은 모래나 돌이 있는 길을 내려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넘어지거나 발목을 빼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 일기 예보를 확인해 날씨와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
  - 기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덧입을 옷을 챙긴다.
  -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모자를 씌우거나 선크림을 발라 준다.
  -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몸에 모기약을 바르는 것도 좋다.
- 구급약과 비상식량 및 헤드랜턴을 준비한다.
- 산에서는 정해진 길로 다니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 (가을철)낙엽이 있는 곳은 주의해서 밟아야 한다.
- (가을철)일찍 출발하고 일찍 하산한다 해가 짧아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출발해서 해가 남아있을 때 하산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 (가을철)보온 의류를 준비한다. 갑작스런 기온 강하는 가을철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 살아 있는 야생 동물을 만지거나 잡으려는 행동은 동물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산행 중에는 화기 소지를 금하고, 산에서 조리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음식물 쓰레기는 잘싸서 되가져오도록 하고, 자연보호 활동도 겸하여 실시한다.

## 4. 캠핑(야영) 활동

### 캠핑(야영) 활동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해당 캠핑장(야영장)이 등록·허가된 시설인지 확인하였습니까?	
구급함 준비 및 의약품 보충은 하였습니까?	
안전사고 예방교육(답사 내용 중심)은 실시하였습니까?	
시설물(텐트 및 주변) 관리(고정줄과 팍)와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화기(휴대용 가스버너와 연료) 관리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부식(음식물) 관리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기상과 취침 전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점검하였습니까?	

**사례1. 2007년 1월 충북 화양동에서 텐트 내 화로대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2. 휴대용가스버너 폭발사고로 인한 사고.**

**사례3. 텐트 스트링(고정줄)에 걸려 고정팩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

### 캠핑(야영) 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화기(휴대용 가스버너 등)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나. 텐트 설치 후 고정팩 다운 및 스트링(줄)에 안전표지(야광테잎 등) 부착
- 다. 독충(벌, 뱀) 대비 주변 위험요소 확인 및 주의
- 라. 야외 생활 시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예방(개인위생 관리)
- 마.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불자리(캠프파이어)를 만들지 않도록 함(화재 위험)

###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일행들이 동요하지 않게 계획된 안전사고예방 계획에 의거 상황대응
- 나. 간단한 응급조치와 함께 인근 의료시설을 이용. 또는 119구급대 연락 조치

### 기타 사항

- 가. 인솔자는 활동 전에 기본 야영법(야영지 선정과 텐트 설치 등)을 숙지하여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
- 나. 되도록 겨울철 캠핑은 지양하고 기본 시설(급수시설 및 보건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캠핑장을 이용
- 다. 절대로 캠핑시설 주변에서는 뛰지 않도록 주의

## 5. 전시·공연 관람

### 전시·공연 관람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단체 관람(전시, 공연) 시 학급별 인솔자를 배치하여 현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퇴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고 않도록 교육 했습니까?	
관람시간(퇴장시간)에 대한 공지는 하였습니까?	
대피로와 출입구에 인솔자를 배치하였습니까?	

### 전시·공연 관람활동 안점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답사 시 확인된 대피로와 출입구에 대한 사전 안내와 통제계획 수립
- 나. 단체 대규모 관람 시 인솔자의 학급 단위 입장 지도로 상황 발생 대비
- 다. 기본적인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조대 연락
- 다.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이나 소리를 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방서에 신고
- 라. 화재나 정전사고 발생 시 입장하고 있던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현장을 대피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이동

### 기타 사항

- 가. 좁은 실내 공간을 활용한 관람시설은 사전에 선택지양
- 나. 인솔자들 끼리 모여 있어 상황발생 시 학생들의 통제 및 관리의 소홀이 없도록 사전 계획 수립

## 6. 겨울철 야외 활동

###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기본교육은 시행하였습니까?	
활동 전 준비운동을 하였습니까?	
학생들의 장비 준비와 착용은 수준과 상황에 맞게 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안전요원의 배치와 운영은 적절하게 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인솔자들의 입장지도(초급자 리프트 동승 등)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건강상태(피로에 다른 휴식 등)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강습 대상 학생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시 고려해야 하며, 초보자는 인솔자나 안전요원과 함께 리프트에 동승하는 등의 입장지도를 고려해야함
- 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운영되는 곳(스키, 썰매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주로 탈골이나 골절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현장 주위의 안전을 우선 확보
- 나. 안전요원에게 연락 후 의무실로 후송하고 이후 인근의료시설 또는 119구급대에 연락

### 기타 사항

- 가. 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과의 연락체계 확보가 중요하므로 해당 활동장과 인근 의료시설과의 연계, 119구급대와의 연락 조치 등이 포함된 사고발생 조치계획을 수립
- 나. 처음 체험하는 학생의 경우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도 과도한 긴장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관찰

# 활동별 응급 조치사항



## 교통 안전

### 가. 멀미

- 1) 승차 전 멀미 예방약을 사용
- 2) 앞자리에 앉도록 함(뒷자리가 상대적으로 진동이 심함)
- 3) 멀미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
- 4) 창문 밖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함

#### ※ 붙이는 멀미약 사용법

- 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승차 4시간 전에 미리 붙인다.
- ② 사용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사용한 손으로 눈을 만지면 동공확대 등 부작용 발생)
- ③ 효과 지속시간이 72시간이므로, 그 전에 다시 붙이지 않는다.
- ④ 갈증, 안통과 동공확대, 오심과 구토, 어지럼증, 방향감각 상실, 기억력 감퇴, 환각과 착란 등의 부작용 증상 나타나면 즉시 떼어 버리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안정한다. →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

☆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1시간 전에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며, 지속시간이 짧은 대신 부작용이 덜하므로 초등학생의 경우 먹는 멀미약을 권장한다.

### 나. 차내 화재 발생

- 1) 인솔자는 학생들을 불길을 피해 질서 있게 신속히 하차시키고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
- 2) 탈출구가 막힐 경우 비상 탈출용 망치(형광용)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깨고 대피로 확보
- 3) 최종 하차 후 차량 탑승 학생 수를 정확히 확인
- 4)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할 지 판단
- 5) 119로 신고

#### ※ 소화기 사용 요령

- 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 ② 불이 난 곳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는다.
- ③ 불길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린다.

### 다. 추돌 사고

- 1)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다친 학생이 있는지 확인
- 2) 목 또는 허리 손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119에 신고 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 3)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함

#### 라. 전복 및 추락

- 1) 개방된 모든 통로로 신속히 대피
- 2) 탈출구가 없을 경우 비상 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통로를 확보
- 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
- 4) 최종 탈출 시 차량 탑승 학생수를 정확히 확인

#### 마.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 1) 학생들이 이동해야할 방향을 판단하여 알림
- 2) 안전띠를 풀고 신발과 옷을 벗어 신속히 탈출
- 3)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침착하게 기다리다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출입문을 열고 탈출
- 4) 최종 탈출 시 차량 탑승 학생수를 정확히 확인



### 항공 및 선박 안전

#### 가. 항공 안전수칙

- 1) 비행기 이·착륙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
- 2) 비행기에 탑승하면 산소마스크, 구명조끼, 위치 확인 및 사용법을 숙지
- 3) 비행기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신호를 확인하고, 비상시에는 두 손을 포개 앞좌석에 대고 팔 사이로 머리를 감싸 안아 몸을 움크리는 충격방지 자세를 취한다
- 4)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테이블 사용 전 상태로 위치시키고, 젖혀 놓은 등받이는 최대한 직각으로 세웁니다. 의자가 뒤로 젖혀진 상태로 사고가 나면 충격의 범위가 넓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음
- 5) 비행 전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발생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른다

#### 나. 항공 비상시 행동요령

- 1) 비상상황 발생 시 소지품 및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 2)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내린다
- 3) 플래시나 플래시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몸에 지니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돌 전 좌석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매며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 4) 물 위에 비상착륙 보트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고 구조를 기다린다
- 5) 사고 비행기에서 벗어나면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한다

### 다. 선박 안전수칙

- 1) 구명조끼 착용법을 숙지하고 선내 탑승후 구명조끼 보관 위치를 확인한다
- 2) 함께 탄 선생님 또는 어른과 함께 구명보트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다
- 3)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 출입금지 장소에 승무원의 허락없이 출입하지 않는다
- 4) 비와 눈이 오거나 바람이 강한 경우 위험하므로 갑판으로 나가지 않는다

### 라. 선박 비상시 행동요령

- 1) 충돌사고나 좌초사고, 전복이나 침수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비상벨이나 큰소리로 알림
- 2) 선내방송이나 승무원 안내에 따라 움직이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확보하고 구조선을 기다린다
- 3) 배에서 쿵 소리나 폭발음이 들리고 배에 충격이 가해지는 등 사고 시 가능한 선실에서 벗어나 탈출이 쉬운 갑판으로 피함
- 4) 비상구가 열리지 않을때는 가까운 곳으로 비치된 도끼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 5) 배가 침몰시 성급하게 바다로 뛰어들면 와류현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 주변을 빨아들여 물 깊은 곳으로 잠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6) 배가 기우는 반대 방향의 제일 높은 쪽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 7) 탈출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으로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는다



## 식사 및 숙소 안전

### 가. 식중독 관련

- 1) 구토 및 설사가 나아질 때까지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
- 2) 이온음료나 물 1L에 설탕 4t와 소금 1t를 섞어 충분히 마시도록 함
-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진료를 받아야 함

#### ※ 병원으로 가야 하는 복통

- |                         |                    |
|-------------------------|--------------------|
| - 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복통     | - 구토, 열을 동반하는 복통   |
| - 복부가 팽만하거나 누르면 아픈 복통   | - 어지러움, 졸림, 혼미한 느낌 |
| -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복통 |                    |

### 나. 비출혈(코피)

- 1)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망울을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10분 이상 압박하여 지혈
- 2) 코뼈 부위에 냉찜질
- 3) 입으로 호흡하게 하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면 뱉어 내도록 함
- 4) 타박상으로 인한 경우, 30분 이상 지혈되지 않으면 병원진료를 받도록 함

**다. 추락사고**

- 1) 의식은 있으나 머리 충격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즉시 119에 신고
- 2) 대부분 골절 등 손상이 있으므로 팔, 다리 등을 무리하여 움직이거나 일어서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함
- 3) 환자의 의식, 호흡, 손상 정도 등을 관찰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라. 화상(열화상)**



화상 부위를 찬물에 20분 이상 담가 열기를 식힌다.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연고나 기름 등도 바르지 않는다.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의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벗긴다.



화상 부위에 깨끗한 거즈를 대고 붕대로 감아 준다.

[출처: (주) 동화사 중학교 보건교과서 178쪽]

※ 햇빛(일광)화상은 (1도 화상과 같이) 찬물이나 찬물수건으로 열을 충분히 식히고, 화상연고를 바른다.

※ 병원으로 가야하는 화상

- 화약 약품이나 전기 화상, 흡입 화상
- 화상에 의한 통증이 계속될 경우
- 화상 부위가 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관인 경우
- 화상의 부위가 넓은 경우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처치**

**가. 산행, 도보 이동, 기타 야외활동(운동 상해)**

**1) 외상의 응급 처치**



[출처: (주) 동화사 중학교 보건교과서 177쪽]

## 2) 외상의 종류별 응급처치

긁힌 상처(찰과상)	베인 상처(절상)	찢긴 상처(열상)	찢린 상처(자상)
상처부위를 씻고, 소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지혈 후 소독한다.</li> <li>상처가 깊거나 벌어진 경우 봉합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처부위를 씻고, 출혈부위를 압박하며 심장보다 높게 해준다.</li> <li>상처가 깊거나 벌어진 경우 봉합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얕게 박힌 물체는 제거하고 지혈 후 소독한다.</li> <li>깊게 박힌 물체는 빠지 말고 수건 등으로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li> </ul>

※ 상처가 크거나 이물질이 많이 묻었을 경우 파상풍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진료를 요함.

## 3) 염좌, 탈골, 골절의 응급처치

가) 염좌: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

☞ 다음의 RICE처치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부종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

**1 안정 (Rest)**



다친 부위를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한다.

**2 냉찜질 (Ice)**



얼음이나 찬 것으로 싸 냉찜질을 해 준다.

**3 압박 (Compression)**



다친 부위를 붕대 등으로 압박하여 싸 준다.

**4 거상 (Elevation)**



다친 부위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 올려 준다.

[출처: (주) 동화사 중학교 보건교과서 179쪽]

나) 탈골: 관절에서 뼈가 어긋난 상태

(1) 손상된 상태 그대로 부목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

(2) 절대 임의로 교정하지 않도록 함

다) 골절: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

(1) 골절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

(2)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복합 골절의 경우 119에 도움을 요청

## 4) 벌에 쏘인 경우

가) 카드 등으로 긁어서 벌침을 제거

나)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도록 함

다) 얼음이나 찬물로 찜질

라) 안면 홍조, 안구 가려움, 전신 발진, 구토, 어지러움 등을 보이는 경우 또는 평소 음식 등에 흔히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던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5) 뱀에 물린 경우

가) 119에 신고

나) 환자를 똑바로 눕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시계, 벨트 등 조이는 부분을 풀어줌

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킴

라) 2~3cm 넓이의 천으로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가까운 5~10cm의 위치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줌

마) 압박대 매기, 칼로 찌기, 입으로 빨아내기, 얼음찜질 등은 하지 않도록 함

6)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가) 절단 부위를 가볍게 씻어 물에 적신 손수건 등으로 싸고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여 말라붙지 않도록 함

나) 절단물을 싼 비닐봉지를 얼음이 든 통에 담아 차갑게 유지

다) 절단 부위 상부는 압박붕대 등으로 묶어 지혈하며 신속하게 병원(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

7) 치아가 손상된 경우

가) 치아가 부러진 경우 부러진 치아 조직을 깨끗한 물로 씻어 병원으로 이송

나) 치아가 빠진 경우 빠진 치아는 물로 살짝 씻어서 가능하면 잇몸에 잘 끼워서 가거나, 우유나 식염수에 담가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다) 피가 나는 잇몸은 손수건 등으로 눌러 지혈

8) 눈 손상

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말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박거리어 이물질이 나오도록 함

나) 눈을 다친 경우 머리를 올린 자세로 눈을 감고 안정하도록 하며, 안통, 시야 흐릿함 등의 이상증상이 있다면 병원진료를 받도록 해야함

다) 눈에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하지 말고, 종이컵 등으로 두 눈을 보호하고 압박 되지 않도록 하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9) 일사병: 더운 곳에서 운동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가) 시원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걸옷은 벗도록 함

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20~30cm)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야함

다) 소금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도록 함

라) 찬 물수건으로 몸을 적시거나 부채질을 하도록 함

마)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

10) 경련, 발작

- 가) 질식 예방을 위해 머리와 몸을 옆으로 돌려줌
- 나) 환자 주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함
- 다) 물, 음료 등을 마시게 하지 말고, 옷은 느슨하게 풀어줌
- 라) 경련 시 입에 어떤 물질도 넣어서는 아니 됨
- 마) 경련 중 눈과 손발의 움직임,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관찰
- 바) 경련이 끝난 후 다시 경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

11) 두부 타박상

- 가) 머리를 약간 높이고 눕히도록 함
- 나) 타박상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줌
- 다) 의식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
- 라) 피가 날 경우 깨끗한 천으로 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지혈 후 병원으로 이송

※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

- 잠깐이라도 의식을 잃은 경우
- 토하거나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
- 귀나 코에서 피가 나가거나 맑은 액체가 나오는 경우

나. 수상 활동, 동계 야외활동 등

1) 물에 빠진 경우

- 가)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손이나 나뭇가지, 로프 등을 이용해서 구조
- 나) 보트가 없다면 튜브나 구명줄을 머리 위로 던진다. 로프가 없다면 옷을 길게 연결하여 던지도록 함
- 다) 학생이 의식이 없다면 수영하여 뒤쪽으로 접근해서 물 밖으로 끌고 나와야 함
- 라) 물을 많이 마셔 구토할 때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 마) 응급처치 후 학생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

2) 저체온증

- 가) 환자를 추운 곳으로부터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함
- 나) 젖은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머리를 말려 줌
- 다) 의식이 정상이면, 옷과 이불 등을 덮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도록 함
- 라) 의식이 없다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

3) 동상

- 가) 환자를 추운 곳으로부터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김

- 나)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반지, 옷, 벨트 등을 제거
- 다) 동상 부위를 절대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않으며, 뜨거운 물이나 난방기구 등에 화상부위를 직접 대지 않도록 함
- 라) 동상 부위가 서로 닿거나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병원으로 이송
- 마) 병원까지 이동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에 (38~42°C)에 피부를 담그도록 함

4) 의식이 없는 경우: 개정 심폐소생술 실시와 자동제세동기(AED)사용

## 심폐소생술

<b>심 폐 소 생 술</b>	1단계: 의식 확인 어깨를 두드리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여보세요. 눈떠 보세요" 등에 반응이 없다면 의식 없음으로 판단한다.
	2단계: 119에 구조요청 주변인 중 특정 1인을 지목하여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3단계: 가슴(흉부)압박 양쪽 유두선과 흉골의 교차 지점에 한쪽 손바닥을 올려놓고, 다른 손을 겹쳐 깍지를 낀다. 팔꿈치는 곧게 펴고, 5-6cm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분당 100회의 속도) 30회 압박한다.
	4단계: 기도유지 한 손은 턱, 다른 한손은 이마에 두고, 턱은 들고 이마를 가볍게 눌러, 고개가 뒤로 젖혀지도록 한다.
	5단계: 인공호흡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구조자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후 1초에 2회 공기를 불어 넣는다.

★ 1~3단계까지를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이라고 하고, 이때는 가슴압박을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사용법

- ①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켜고, 음성안내에 따른다.
- ②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후 전극패드를 오른쪽 쇄골아래와 왼쪽 유두아래 겨드랑이선에 부착한다.
- ③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심장 리듬 분석을 기다린다.
- ④ 환자로부터 떨어져 안내에 따라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 ⑤ 제세동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그림출처: www.1339.or.kr]



## 구급상자 정리요령

\*구성: 붕대와 반창고, 거즈, 일회용 밴드와 외상 연고, 소독약, 스프레이 파스, 가위, 핀셋, 면봉, 기본 의약품

\*기본 의약품: 소화제, 정장제, 감기약, 진통제, 여성용품, 모기약, 멀미약

